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 비교연구

濟州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胥 穎 超

2011年 8月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 비교연구

指導教授 黃正奉

胥穎超

이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1年 8月

胥穎超의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1年 8月

<목 차>

I. 序 論	1
1. 研究의 背景 및 目的	1
2. 研究의 方法 및 構成	3
II. 原產地規定에 관한 一般的 基準	4
1. 原產地規定의 概要	4
1) 원산지규정의 개념 및 구성요소	4
2) 원산지의 분류 및 적용분야	6
3) 원산지규정의 중요성	7
2. WTO 統一原產地規定	9
1) WTO 통일원산지규정의 의의	9
2) WTO 통일원산지규정의 필요성	10
3) WTO 통일원산지규정의 일반원칙	11
3. 原產地의 主要 判定基準	12
1) 원산지의 일반적 판정기준	12
2) FTA에서의 원산지 결정기준	23
III. 韓國과 中國 原產地規定의 比較分析	27

1. 韓國의 原產地規定	27
1) 韓國의 원산지규정 관련 법률체계	27
2) 韓國의 원산지규정의 특징	30
2. 中國의 原產地規定	37
1) 中國의 원산지규정 관련 법률체계	37
2) 中國의 원산지규정의 특징	48
3. 韓國과 中國의 原產地制度 比較	55
1) 원산지 관련 규정의 비교	55
2) 원산지 표시방법의 비교	57
3) 원산지 판정기준의 비교	58
4) 원산지 확인절차의 비교	59
5) 원산지규정 위반 벌칙의 비교	60
IV. 韓國과 中國의 主要産業의 原產地規定 比較	62
1. 섬유산업 원산지규정 비교	62
2. 철강산업 원산지규정 비교	67
3. 자동차산업 원산지규정 비교	69
4. 일반기계산업 원산지규정 비교	72
5. 전기전자산업 원산지규정비교	77
V. 中國의 原產地規定 問題點과 改善方案	82



1. 중국 원산지규정의 현황	82
2. 중국 원산지 표시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4
3. 중국 원산지 판정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4
4. 중국 원산지 확인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6
VI. 結論	89
참 고 문 헌	91
ABSTRACT	95

<표목차>

<표 2-1> 원산지규정 구성요소 및 주요내용	5
<표 2-2> 실질적 변형 기준의 장단점 비교	16
<표 2-3> 세번변경기준의 종류	17
<표 2-4> 세번변경기준의 실례	18
<표 2-5> 특정 수입물품의 원산지	19
<표 2-6> 보충적 원산지 결정기준	21
<표 2-7> FTA 원산지 결정기준 유형 비교	26
<표 3-1> 한국의 원산지법령 체계도	29
<표 3-2> 한국 FTA에서의 원산지규정비교	31
<표 3-3>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원산지기준의 비교	33
<표 3-4> 중국의 원산지규정 체제도	38
<표 3-5> 중국의 원산지규정 구성	40
<표 3-6> 중국 FTA 원산지규정의 원산지기준의 비교	49
<표 3-7> 중국 기체결 FTA 원산지규정 내용 비교	50
<표 3-8> 중국 FTA에서의 보충적 원산지규정	54
<표 4-1> 한국과 중국 양국의 섬유 산업의 발전 단계	62
<표 4-2> 섬유산업 원산지규정 완화품목 (HS 54, HS 55류)	66
<표 4-3> 섬유산업 원산지규정 강화품목 (HS 54, HS 55류)	66
<표 4-4> 철강산업 원산지규정 완화품목 (HS 72, HS 73류)	68
<표 4-5> 철강산업 원산지규정 강화품목 (HS 72, HS 73류)	69
<표 4-6> 자동차산업 원산지규정 완화품목 (HS 87류)	72
<표 4-7> 자동차산업 원산지규정 강화품목 (HS 87류)	72
<표 4-8> 일반기계산업의 주요 품목별 FTA에서의 원산지규정	74
<표 4-9> 일반기계산업 원산지규정 완화품목 (HS 84류)	76
<표 4-10> 일반기계산업 원산지규정 강화품목 (HS 84류)	76
<표 4-11> 전기전자산업의 주요 품목별 FTA에서의 원산지규정	79

<표 4-12> 전기전자산업 원산지규정 완화품목 (HS 85류) 81

<표 4-13> 장기자산업 원산지규정 강화품목 (HS 85류) 81



I. 序 論

1. 研究의 背景 및 目的

물품의 원산지(origin of goods)란 특정물품이 성장(growth), 생산(production) 제조(manufacture) 또는 가공(processing)된 지역이나 국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원산지로 할 수 있고, 마카오 등과 같은 특별 행정구 관세 영역이나 자치권을 보유한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 등의 무역제도에 종속되어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공통된 규정은 없으며, 각 나라가 독자적으로 정하거나 각 지역별 무역협정 대상국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포함된 무역제도의 목적에 맞추어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구분한다.

원산지규정 자체는 직접무역을 제한하거나 촉진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중립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한국, 일본, 홍콩 등의 기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견제하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의 내용은 원산지 판정기준과 확인절차, 원산지 표시 대상과 방법, 위반하였을 때의 조처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가운데 핵심은 어떤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변형이 이루어진 나라에 원산지 자격을 주는 원산지 판정기준이다.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수출가격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산지 판정기준은 원재료부터 마지막 가공까지 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제품에 적용하는 완전생산기준(a goods wholly obtained test)과 2개 나라 이상에서 제품이 만들어진 경우 실질적 변형과정이 이루어진 나라에 적용하는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으로 나뉜다.¹⁾

1) <http://100.naver.com/100.nhn?docid=813669>.

현재 세계는 WTO 주도의 무역자유화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FTA를 통한 세계시장의 지역블록화는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 12월 기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협상 중이거나 검토 중인 협정은 총 290건이며, 이 중 자유무역협정이 17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²⁾ 즉,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정부가 처음부터 FTA에 큰 관심을 가져왔던 것은 아니다.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세계화와 지역경제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FTA 등 지역협력을 추진하는 주도 세력으로 변신하였다. 먼저 2004년 1월 1일 홍콩과 마카오 CEPA가 발효된 후 2010년 12월 현재 모두 9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으며, 협상 중인 FTA가 6개이며, 검토 중인 FTA가 5개이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FTA 협정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4년 4월 1일 칠레와의 FTA 협정이 발효된 후 2010년 12월 현재 모두 4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 되었으며, 서명·타결된 FTA가 3개 이며, 협상 중인 FTA가 7개이다.³⁾

원산지규정은 FTA의 효과적인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국간에 FTA가 체결될 경우, 일국에서 상대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FTA 협정문에 명시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특혜관세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상대국에서 생산 되었는가’를 결정하는 원산지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원산지규정은 신속히 발전되고 있는 FTA의 확산과 세번 경제일체화와 결합되어 그의 중요성을 더욱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중 양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에 원산지규정의 특징을 살펴본 후 양국의 주요 제조산업을 중심으로 원산지규정에 대해 비교·분석하여 원산지 완화기준과 강화기준을 제시하고 중국 원산지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중국 원산지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http://fta.mofcom.gov.cn/index.shtml>.

3) 張萍, “中·韓 FTA 原產地 決定基準에 관한 研究”, 慶尙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1. p.1.

2. 研究의 方法 및 構成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와 자료를 분석하였고, FTA의 협정문을 근거로 통계자료와 병행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국내·외 단행본, 전문서적, 연구논문, 학위논문, 학술논문 그리고 한국무역협회,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무역연구원 등의 유관기관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또한 통계자료의 수집에서는 중국해관, 중국검증검역, 한국 관세청의 품목분류, 한국 무역협회의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총 6 장으로 구성되고 있다.

제 I 장은 서론 부분으로 연구의 배경 및 주요 연구목적, 연구의 방법 및 논문 구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제 II 장에서는 원산지규정의 기본개요(개념, 구성요소, 분류, 적용분야 및 중요성 등), WTO통일원산지규정의 필요성 및 의의, 그리고 원산지 주요 판정기준을 서술하였다.

제 III 장에서는 먼저 한·중 양국의 원산지규정 관련 법률체계를 분석하고, 양국의 원산지 규정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원산지표시방법, 판정기준, 확인절차 측면으로 한·중 원산지규정을 자세하게 비교·분석 하였다.

제 IV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섬유산업, 철강산업, 자동차산업, 일반기계산업, 전기전자산업, 이 5개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규정을 비교·분석 하였다.

제 V 장에서는 중국 원산지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VI 장은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종합하고, 연구결과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Ⅱ. 原產地規定에 관한 一般的 基準

1. 원산지규정의 개요

1) 원산지규정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원산지규정의 개념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에 있어서 특혜무역협정(PTA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가공·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국가연합이나 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 포함)를 말한다.⁴⁾ 즉, 원산지란 특정물품이 성장(growth), 생산(production), 제조(manufacture) 또는 가공(processing)된 국가 또는 물품의 국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본의 투자국, 디자인 수행국, 기술 제공국, 상표의 소유국 등과는 무관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지닌 하나의 국가를 원산지로 할 수 있으면 사이판 등과 같이 국경선 밖에 있는 보호령, 홍콩 등과 같이 독립된 관세영역이나 자치권을 보유한 지역, 스코틀랜드와 같이 국제상거래 관행상 지역명이 원산지로 인정되는 지역 등도 원산지가 될 수 있다.⁵⁾

일반개념에 의하면 지역이란 의미는 한 국가의 영역을 의미하지만 지정학적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한 국가 내의 특정지역이나 국경선 밖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원산지는 해당상품의 국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상품을 단순히 조립·가공한 국가나 운용상 또는 무역거래상 단순히 경유한 경유국 또는 적출국을 원산지라고 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광물, 식물, 동물 등 천연상품 위주의 완전생산품은 원산지결정에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공산품 등 2차 산품은 생산·제조·가공 공정이 두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법률 제8852] 제2조 4항.

5) 전순환, 『대외무역법』, 한울출판사, 2009,3. p.295.

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 판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 각국이 제도화된 법률이나 규칙을 정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다.

물품의 실제적인 원산지를 판정·확인하는 일련의 행정적 절차를 표시할 수 있는 원산지 규정을 각국의 주권차원에서 관리감독 되고 있고, 세부적으로 원산지 규정을 국제법규, 법률, 규정, 관례 및 행정결정 등 통일화된 원칙과 규칙 형식보다는 다양한 제도로써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2) 원산지규정의 구성요소

원산지규정은 원산지인정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 요건과 통관과정 등에서 여러 요건의 충족여부를 밝히는 원산지 확인절차 및 이에 따른 여타 조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산지규정의 핵심요소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표 2-1> 원산지규정 구성요소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원산지 결정기준	1. 완전생산기준 (Wholly Produced Criterion) 2.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1) 세번변경기준 (Tariff Shift Criterion; 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2)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on) 3) 가공공정기준(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원산지 확인절차	1. 확인대상 물품 2. 원산지 증명서류 3. 원산지 확인절차 4. 허위신고 처벌규정

자료: 초서량, “한국 FTA와 중국 FTA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12. p.5.

2) 원산지의 분류 및 적용분야

원산지규정은 대체로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판정기준 등 실체적 규정과 원산지증명 서류의 작성 및 제출, 세관당국 확인 과정 등 절차적 규정으로 구성된다. 실체적 규정인 원산지 판정기준은 모든 물품에 적용되는 일반적 규정과 특정 물품에 한하여 적용되는 품목별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산지규정의 적용목적에 따라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원산지표시, 쿼터 등 관세특혜 이외의 목적에 적용되는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로 분류할 수 있다.

(1) 특혜원산지규정

특혜원산지규정은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지역경제공동체 또는 자유무역지역지대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도국간의 특혜관세제도(GSTP), 다자간 무역협정인 방콕협정(ESCAP) 등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을 말한다.

FTA의 특정원산지규정은 자유무역협정 당사국이 상호 역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비당사국 생산물품과 차별화하여 특혜과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써 원산지결정에 관한 실체적 규정과 원산지증명, 확인 등 절차적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혜원산지규정은 수입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기준이므로 국내산업과 생산물품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특혜원산지규정은 FTA협상 관세철폐계획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쟁점사항이 된 반면에 특혜원산지규정은 최근 심각한 비관세장벽의 하나로 대두 되고 있다.⁶⁾

이와 같은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요건충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2) 비특혜원산지규정

6) 최홍석, “특혜원산지규정의 무역장벽효과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36.

비특혜원산지규정은 반덤핑관세부과, 상계관세부과, 원산지표시, 세이프가드 차별적 수량제한 등의 무역정책수단과 정부조달, 무역통계작성 등에 있어서 물품의 원산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을 말한다. 이는 관세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 반덤핑관세부과, 상계관세부과, 세이프가드 및 무역구제조치를 위한 원산지 규정 및 이의 적용배제를 위한 규정
- 검역, 추천 등 원산지별 제한을 받는 경우의 원산지규정
- 소비자보호를 위한 원산지표시 및 라벨링 목적의 원산지규정
- 수·출입통계, 정부조달을 위한 원산지규정

이외에 원산지표시나 통계 등의 목적을 위해서 별도의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으나, 덤핑방지 관세품목임에도 우회수입 하였거나 당해회사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목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⁷⁾

3) 원산지규정의 중요성

오늘날 국제간에 인용되는 WTO의 규정에 따르면 원산지규정은 국제무역상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한 제반 법률, 규정 및 판례 그리고 관련 행정절차를 총칭하는 개념이다.⁸⁾

원래 원산지제도는 수출 또는 수입상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판정하고, 확인하며, 표시하는 제도로 물품의 제조·생산 국가를 명확히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을 뿐, 그 자체가 자유무역협정이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FTA에 따른 무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원산지가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FTA에 있어서 원산지규정이 핵심이 된다. 원산지는 그 자체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지만, 그것이 다른 무역정책수단과 결합하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

7) 박주원, "한국 원산지증명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p.6-7.

8) Agreement of Rules of Origin, Part 1, Article 1, Rules of Origin 1.

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원단을 한국에서 재단하여 중국에서 의류로 봉제한 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의류의 부가가치는 디자인에서 나오고, 이는 재단공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재단한 나라인 한국이 원산지 판정된다. 그러나 인건비나 설비비중의 측면에서 보면 봉제한 나라인 중국이 원산지가 된다. 따라서 의류를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에 섬유쿼터라는 제도가 적용되어 한국산 혹은 중국산의 원산지에 따라 수출가능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생긴다면, 이는 원산지판정이 핵심적인 문제로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원산지증명은 당해 무역조직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보조적 제도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FTA에 있어서도 원산지증명이 무엇보다 무역특혜 제공시 특혜수혜 대상물품의 결정기준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 즉, FTA 체결 국가 간에 원산지 기준에 의거하여 제품의 원산지가 역내국일 때에만 특혜관세의 혜택이 있고, 역외국일 때에는 특혜관세를 제공받을 수 없다.

원산지 제도의 일반적인 필요성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 ② 특정 생산품의 차별화를 통한 생산자 보호
- ③ 무역특혜 제공시 특혜수혜 대상물품의 결정기준
- ④ 덤핑방지관세부과, 긴급수입제한조치, 쿼터제도 등 각종무역제한조치의 실효성 확보수단
- ⑤ 수출입 통계는 해당물품의 선적항을 기준으로 하나, 원산지를 감안하면 보다 의미 있는 통계자료로 활용가능

기업이 글로벌화 되면서 원재료를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을 통해 확보하거나 제품의 글로벌 생산을 확대하는 등 세계화 경제 시대가 발전할수록 물품에 대한 국적을 결정하는 원산지 결정이 매우 어렵고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는 “어디까지 생산해야 그 나라를 원산지로 결정하느냐”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FTA 협정 체결국 간에도 교역 시 수출입 화물에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은 상대국으로부터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줌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고 통관과정의 지연 및 복잡성을 해소할 수 있는데, 수출국의 경우 통관과

정 이전에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교역제품 자체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원산지 확인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수출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입국의 경우에 원산지가 확인된 제품에 대한 관세양허혜택을 부여하고 수입함으로써, 저가상품이 난립할 수 있는 우회수출을 방지하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국내 국민경제활동에 이바지 할 수 있기에 원산지증명이 중요하다.

2. WTO 통일원산지규정

1) WTO 통일원산지규정의 의의

세계무역질서의 변화와 생산 활동의 질적인 변화는 원산지규정의 중요성 및 국제적으로 공통된 원산지규정의 필요성도 증가시켰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규정은 관세무역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초기에 이미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각국의 의견 불일치로 국제적인 기준이 채택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논의는 관세협력기구(CCC: Customs Cooperation Council)에서 이루어졌다. 1973년 CCC 주관으로 교토협약에서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 절차 등 비교적 상세한 원산지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이를 수용한 국가가 20여 개국에 불과하며 강제성이 결여되어 국제적 통일 규정으로 발전 되지 못하였다. 결국 각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원산지규정을 시행하게 되었고, 주요 국가들은 원산지규정을 무역 정책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 무역 분쟁은 야기 시키기도 하였다.

원산지규정이 본래의 목적 이외에 무역 장벽의 효과를 수반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해 원산지기준의 조화(Harmonization of Rules of Origin)를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비관세부문의 협상의제로 채택, 비특혜 교역에 대한 통일 원산지기준을 UR 후속협상에서 다루기로 합의하였다. UR 타결 이후 GATT를 대체하여 설립된 WTO가 출범되면서 1995년 7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주관으로 통일 원산지기준 제정⁹⁾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

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비특혜 원산지기준을 위한 통일원산지기준 도입을 위한 움직임과는 별도로, 최근 FTA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FTA 상에서의 양자간 특혜원산지기준 도입을 위한 원산지규정 협상이 주목받고 있다.¹⁰⁾

2) WTO 통일원산지규정의 필요성

선진국에서는 원산지 규정을 주요한 무역수단으로 이용한다. 이에 따라 WTO에서는 원산지규정의 국제통일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은 관세목적 이외에도 비관세목적으로 수출촉진과 수입규제를 통한 국내산업의 활성화와 대외무역거래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 오며, 결국은 국내소비자보호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또한 수출 대상국 혹은 수입대상국과 복잡한 통상마찰을 야기 시키기도 하는 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세계경제체제의 중요한 일원으로 합리적인 원산지 규정의 발전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고 세계경제 질서를 정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세부적으로 각국 원산지규정 통일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¹¹⁾

첫째, 현재 원산지규정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이 없어 국가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으로 원산지를 판정하기 때문에 국제무역에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한다.

둘째, 각국 원산지규정의 제정측면과 운영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통상정책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규정을 제정하기도 하며, 산업정책수단 또는 투자억제수단으로서 원산지규정이 제정되는 경우도 있다.

셋째, 국제경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국제투자교류로 인하여 복수국가가 물품을 만든 경우, 국가마다 원산지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원산지를 확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의 통일이 필요하다.

상술한 원인으로 인하여 원산지규정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하며, WTO 원산지

9)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을 위한 작업은 WTO가 세계관세기구에 통일원산지규정 제정 작업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WCO산하의 원산지규정기술위원회(TCRO)에서 기술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WTO산하의 원산지규정위원회(CRO)에서 정책적 결정을 한 후 WTO 일반이사회에 상정하고, 최종적으로 WTO 각료회의에서 이를 확정한다.

10) 양효정, “한·중 주요 산업별 원산지규정 비교분석”,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12. p.8.

11) 이춘삼, “WTO 통일원산지규정의 체제화 과정”, 중재학회지 제 6권. pp.300-302.

규정협정은 이러한 시대적 필요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었다.

3) WTO 통일원산지규정 일반원칙

원산지규정협정(Agreement of Rules of Origin)은 전문과 총 4 부, 9개조,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WTO 원산지규정협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은 원산지규정을 시행하는 취지와 목적 즉, GATT 목적 증진을 위한 원산지규정의 통일을 제시하였다. 즉, 계약국은 명백하고 예측가능한 원산지규정이 국제무역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투명 하고 예측가능한 원산지규정의 적용과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바란다.

제 1 부에서는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제 2 부에서는 원산지제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제 3 부에서는 통보, 검토, 협의 및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 제 4 부에서는 원산지제도 통일에 관한 목적 및 규정작성 원칙 등을 기재하였다.

부속서 1에서는 원산지규정에 관한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on Rules of Origin)의 임무 및 운영방법, 대표(1회원국 1 명 이상의 대표 지정 가능), 회의(년 1회 이상), CCC(Customs Cooperation Council)산하에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였다.

부속서 2 에서는 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공동 선언(Common Declaration), 비특혜 원산지규정과 다른 특혜원산지규정 적용에 관한 절차 등을 기재하였다.¹²⁾

WTO 원산지제도의 일반원칙을 아래와 같다.¹³⁾

① 국제통일원산지규정의 기본정신은 국제무역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원산지제도가 무역의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수입제한조치와 같은 특정목적을 위하여 왜곡되지 않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② 비특혜 무역 중심의 원산지제도. 다만, 부속서 2에서는 특혜 무역관계에 있

12) 이춘삼, "WTO 통일원산지규정의 체제화 과정", 상사중재학회지 제 6권. p.304.

13) 박중수, 고중환, 『세계지역론』, 삼영사, 2009, pp.119-121.

어서도 불소급의 원칙 등 비특혜 무역부문에 적용되는 기본원칙을 수용하도록 선언하여 적용범위에 대한 협상 참가국의 의견을 절충하였다.

③ 원산지규정은 최혜국대우를 포함한 모든 비특혜 무역정책수단에 동등, 무차별 원칙을 적용한다.

④ 특정물품이 한 나라에서 완전히 획득된 경우의 원전생산기준과 둘 이상의 국가가 생산에 관련되어 있을 때 실질적변형기준이 적용된다.

⑤ 원산지규정은 객관적이고 이해 또한 예측 가능하여야 한다. 회원국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행정적인 결정을 내릴 경우, 충족되어야할 요건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⑥ 원산지판정 요청 보장이 있다. 당해 특정 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은 모든 필요한 요소가 제출된 후 가능한 조속히, 늦어도 그러한 판정요청이 있는 후 150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원산지판정은 3년 동안 유효 한다.

⑦ 원산지의 모든 정보는 관계당국에 의하여 엄격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사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공개가 요구되어질 수 있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 개인이나 정부의 공식적인 허락 없이는 관계당국은 이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원산지의 주요 결정기준

1) 원산지의 일반적 판정기준

원산지 판정은 A국이 생산한 물품을 C국이 수입하는 것과 같이 특정물품의 생산에 1개국이 관련된 경우 이거나, 또는 A국이 B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여 생산한 물품을 C국이 수입하는 것과 같이 특정물품의 생산에 2개국이 관련된 경우, 이들 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¹⁴⁾ 즉, 원산지 판정기준이란 특정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되었을 경우 과연 어느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국제적으로 협의된 통일된 규칙이 없다. 그러므로 국가별, 상품별, 관세 혹은 비관세 목적인가의

14) 전순환, 『대외무역법』, 한울출판사, 2009,3. p.323.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완전생산물품, 실질적 변경,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 등 원산지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완전생산물품”(수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②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③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

참고로, 원산지 기준이란 해당 수출품의 수출국을 원산지국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으로서, 일반적으로 가공공정기준 및 부가가치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수출국내에서 획득·제조·가공된 수출품은 당연히 수출국이 원산지 국가가 된다.¹⁵⁾ 원산지기준은 원료를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 하거나 글로벌 제품생산(global manufacture)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1) 완전생산기준

가) 완전생산기준의 정의

완전생산기준(wholly produced criterion)은 어떤 물품이 타국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한 나라 내에서만 획득·생산되는 경우와 같이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동물, 식물, 광물 등 천연상품이나 그것만으로 제조된 상품에 적용되며, 교토협약은 다음과 같은 물품에 한하여

¹⁵⁾ 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 제1-3조 제2항.

특정국가에서 완전히 생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① 해당국의 토양, 영해 또는 해저에서 채취한 광물성 생산품
- ② 해당국 영역에서 수확 또는 채집된 식물성 생산품
- ③ 해당국 영역에서 출산 또는 사육된 산 동물
- ④ 해당국 산 동물로부터 얻은 생산품
- ⑤ 해당국 영역에서 수렵이나 어로에 의하여 채취된 물품
- ⑥ 해당국에서 국제선박의 해양어로에 의하여 얻은 물품 및 해양에서 취득한 기타의 물품
- ⑦ 위⑥의 물품으로 해당국 선박에서 생산한 물품
- ⑧ 해당국 영역외의 해저 토양 또는 하층토에서 채취한 물품(다만, 해당국의 개인 또는 기업이 개발권을 가지는 것을 조건으로 함)
- ⑨ 제조가공업 중에 생긴 부스러기 또는 중고품으로서 해당국에서 수집되는 원료의 재생에 적합한 것
- ⑩ 해당국에서 ①-⑨ 물품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¹⁶⁾

나) 완전생산기준의 실례

완전생산물품은 농수산물, 동식물, 지하자원 등의 천연생산품이나 이들 천연생산물만은 원재료로 하여 한 나라에서 제조한 물품(예를 들면, 뉴질랜드에서 자란 양에서 양모를 채취하여 이를 원료로 하여 뉴질랜드에서 제조한 직물)등을 말한다. 따라서 완전생산기준은 수입원재료 또는 원산지불명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하거나, 또는 당초 생산국 이외의 국가에서 단순화 가공활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 될 수 있다.

(2) 실질적 변형의 기준

실질적 변형의 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은 상품이 2개국 이상

16) 조미진, 여지나, 김민성.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 규정 비교』,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p.13.

에 걸쳐 생산된 경우 해당 물품이 실질적으로 변화공정을 최종적으로 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기준을 말한다. 즉, 어떤 동물의 출생국과 사육국이 다른 경우, 또는 여러 나라의 부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경우와 같이 생산에 2개국 이상이 관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결정한다.

실질적 변형기준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범위까지 실질적 변형인지 불분명하여 논란의 소지가 많아 규정이 까다롭고 복잡한데, 실질적 변형의 생산 형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고려하여 판정을 한다.

- ① 생산국에서 수입된 원재료와 전혀 다른 새로운 상품을 생산했는지 여부
- ② 생산된 완제품이 수입된 원재료와 다른 용도와 명칭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 ③ 생산국에서 단순한 포장이나 조립 외에 제품의 실질적 변형을 야기 시키는 생산 활동이 있었는지의 여부

실질변형기준은 그 변형이 세계적으로 통일된 상품분류제도인 HS¹⁷⁾ 코드를 이용 하여 세번의 변경을 초래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tariff shift criterion), 그 변형으로 인해 일정 비율에 부가가치가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on), 그 변형이 특정한 제조공정을 사용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가공공정기준(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또는 주요공정기준(Specific Process rules)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세번변경기준과 가공공정기준은 기술적인기준이며, 부가가치기준은 경제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해외 위탁가공물품은 설령 원부자재를 모두 위탁자국에서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물품이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가공공정을 시행한 국가가 원산지가 된다.

17) 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통합품목분류표)

<표 2-2> 실질적 변형기준의 장단점 비교

구분	장점	단점
세번변경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자가 변형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의 입증과 예측 가능성이 높음 - 원산지결정을 위한 조건이 기계적이고 객관적이며, 예측 가능함 - 국제적인 품목분류기준을 기초로 하므로 예측 가능성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분류에 맞추어 품목작성 곤란 - 분류품목은 기술적 진보, 경제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수시로 최신의 것으로 경신할 필요가 있음 - 수출입국 양국 간에 동일한 품목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부가가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이 정확하고 단순함 - 상업상의 기록 또는 서류 등에 의해 원산지의 입증 및 결정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치의 경계선에 있을 경우 결정, 입증 문제발생 - 원재료의 시장가격 및 환율이 변동에 의해 원산지 지위 좌우 - 수출입국간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경우 기초가 되는 제조비나 총경비 등 요소 구성과 해석에 있어서 불일치가 나타날 가능성
가공공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결정을 위한 조건이 정확하고 객관적 - 제조자가 변형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의 입증이 일반적으로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받는 가공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해야하고 도 작성이 곤란 - 예외품의 표 작성이 곤란하고 동시에 기술적 진보, 경제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수시로 개정할 필요

자료: 김한성, 조미진, 정재완, 김민성,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 전략”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p.12.

가)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tariff shift criterion)의 제조·가공을 위한 수입한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이 생산된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여 해당국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세번변경기준은 국제통상코드인 “HS 품목번호”에 근거하므로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세번변경기준은 실질적인 변형의 객관적 기준으로서 “WTO원산지 규정협정”에서도 기본원칙으로 채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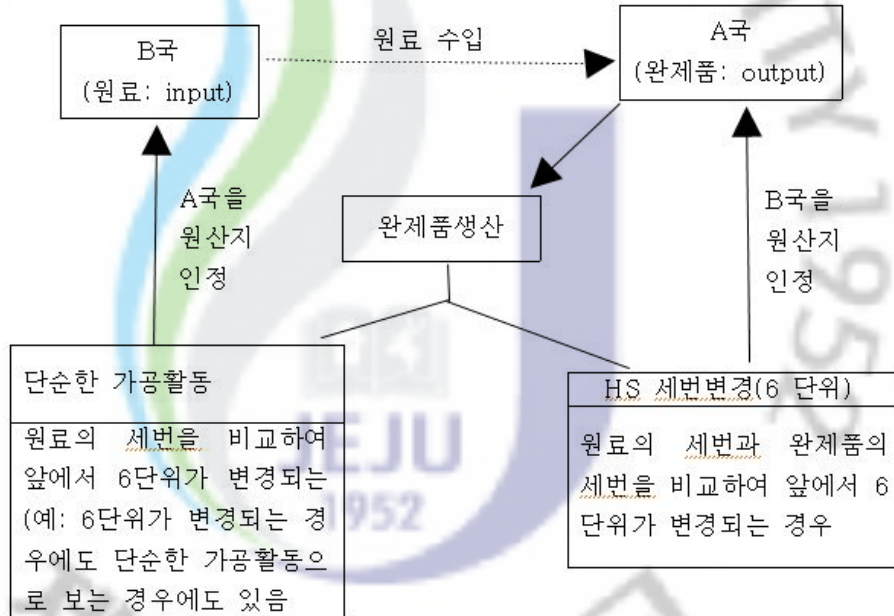
<표 2-3> 세번변경기준의 종류

구분	약어	내용
HS 2단위 (류)변경기준	CC(Change of Chapter)	다른 2단위 류에서 해당류로의 변경
HS 4단위 (호)변경기준	CTH(Change of Tariff Heading)	다른 4단위 호에서 해당호로의 변경
HS 6단위 (소호)변경기준	CTSH(Change of Tariff Subheading)	다른 6단위 소호에서 해당류로의 변경

자료: 김무한,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12.

그러나 세번변경만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단순조립 또는 가공의 경우는 추가적인 요건을 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단순조립 또는 단순가공에 속하는 경우로는 운송 또는 보세구역장치 중에 있는 물품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판매를 위한 개수작업, 단순한 선별·구분·절단 또는 세척작업, 재포장 또는 단순화 조립작업,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 등이 있다.¹⁸⁾

<표 2-4> 세번변경기준의 실제



자료: 전순환, 『대외무역법』, 한울출판사 2009.3. p.327.

A국이 B국으로부터 유리섬유(HS 7019.00)를 수입하여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직물(HS 4016.00)을 생산한 경우에는 B국을 원산지로 한다.

나)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on)¹⁹⁾이란 특정 물품에 전체 가치 중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기준으로서, 세번변경이 실질적 변형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주요부품이나 주요공정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사용 된다. 이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본다. 이 기준은 상업송장에 의하여

18) 송조율,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 규정에 관한 비교연구",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8. p.12.

19) "부가가치기준"이란 수출품의 제도과정에서 수출국이 부가한 가치의 정도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출국이 원산지 국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은 각국에 따라 상이하다.

수입 원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간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이 기준은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으나, 정확한 부가가치율 확정하기 어렵고 세관이나 무역거래자에게 추가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표 2-5> 특정 수입물품의 원산지

품목	원산지판정기준
HS 9006.51 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파인더(싱글렌즈 레플렉스)를 갖춘 것 (폭이 35밀리미터 이하의 롤필름용인 것에 한하여 특수용도사진기 또는 일회용 사진기는 제외)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해당 물품에 사용된 원료 및 부품의 부가가치 원료 및 부품을 생산 또는 최초로 공급한 국가 2. 제 1호의 국가가 없거나 2개국 이상인 경우는 주요 부품(셔터, 렌즈, 줌경통, 파인더)이 차지하는 부가가치의 비율이 높은 국가
HS 9006.53 기타(폭이 35밀리미터의 롤필름용인 것에 한하며 특수용도 사진기 또는 일회용 사진기는 제외)	

자료: 전순환, 『대외무역법』, 한울출판사, 2009. 3. p.329.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은 위에 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카메라 1개 품목으로서, 완제품에 사용된 원료 및 부품의 부가가치가 완제품 부가가치의 35%이상인 경우 해당 원료 및 부품을 생산 또는 최초로 공급한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 다만, 35%이상인 국가가 없거나 2개국 이상인 경우는 주요부품(셔터, 렌즈, 파인더)이 차지하는 부가가치의 비율이 높은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

다) 특정가공공정기준

실질적 변형의 또 다른 기준이 특정가공공정 기준 또는 기술테스트 방법(TT: technical test)인데 이러한 기준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제조·생산 또는 가공과정

중 특정한 공정을 당해국에서 수행한 때에 한하여 특정부품을 사용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가공공정기준(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²⁰⁾은 상기 기준 중 가장 객관적인 기준으로 특정물품의 생산에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 또는 사용된 특정 부품을 생산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는 각 품목 별로 기술적으로 중요한 제조·가공을 열거하여 해당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기준이다.

본 기준을 적용할 경우의 예로, 커피의 경우에는 볶음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면 TV의 경우에는 브라운관(CRT)을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재단한 직물을 봉제하여 완성한 의류의 경우 재단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다.

라) 보충적 원산지 결정기준

세번변경기준을 보완하거나 경직성을 완화하고 부가가치기준 등 원산지 세부기준별로 내포되어 있는 모순점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보충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보충기준으로는 미소기준(De minimis), 누적기준(Accumulation), 불인정공정/최소가공공정(Minimal process)등이 있다.

아울러 원산지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며, 제3국에서 선적되어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불인정하는 직접운송원칙(Direct consignment)등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이들 외에도 역외가공인정(outward processing), 부속품 및 포장용품에 관한 규정 등의 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중 미소기준, 누적기준, 역외가공, 부속품 및 가공용품에 관한 규정은 원산지규정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기준이며, 직접운송원칙과 최소가공기준 등은 제3국의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부가규정으로 볼 수 있다.²¹⁾

20) “가공공정기준”이란 부가가치적용품목이35%이상 생산한 국가가 하나도 없거나 35%이상을 생산한 국가가 2개국이상인 경우에 ‘주요부품’을 생산한 국가 또는 ‘주요공정’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서 부가가치기준을 보완하는 기준이다.

21) 조미진, 여지나, 김민성.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 규정 비교』,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p.16.

<표 2-6> 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

구분	내용
미소(微小)기준	미소기준에 의한 원산지규정은 비원산지 자료가격이 당해물품의 전체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할 경우에는 품목별 원산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번변경기준 등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규정
누적(累積)기준	일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나 재료가 상대국의 물품에 포함되거나 결합되는 경우 그 물품이나 재료는 상대국이 원산지인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불인정공정/ 최소가공공정	단순, 경미한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정하는 원산지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
직접운송원칙	수출 당사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만 원산지로 인정함. 직접 운송된 요건: - 그 경우가 지리적 이유 또는 오직 운송요건에만 관련된 고려해 의하여 정당화 되는 경우에 -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 그 상품이 하역, 재산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할 경우
역외가공인정	자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제3국에서 반제품을 만든 후, 제반입하여 자국에서 최종 생산한 물품에 대해 자국산 무품가격을 자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금액에 포함하는 제도임
부속품 및 포장용품에 관한 규정	-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등은 해당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함 -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용품 및 포장용구는 그 내용물의 원산지를 따라지만, 관세율표상 포장용품과 내용물을 별개의 품목번호로 분류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자료: 張萍, “中·韓 FTA 原產地 決定基準에 관한 研究”, 慶尙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1.2. p.10.

(3)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

가) 단순한 가공활동 기준의 정의

단순한 가공활동 기준이란 수출입 물품의 생산·제도·가공과정에 들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단순한 가공활동”이란 다음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①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
- ②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위한 가공활동
- ③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등과 관련된 활동
- ④ 제조, 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 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
 - 통풍
 - 건조 또는 단순가열 (볶거나 굽는 것 포함)
 - 냉동, 냉장
 -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 기름칠, 녹 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
 -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
 - 시험 또는 측정
 -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함
 - 가수, 회석, 흡습, 가염, 전리(ionizing)
 -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가축의 도축(slaughtering)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혼합
 - 퍼기(spreading out), 압착(crushing)
 - 가목 내지 파목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

나) 단순한 가공활동 기준의 실례

고사리(HS 070900)가 건조되어 건고사리(HS 071290)로 되거나 해삼(HS 030791)이 냉동되어 냉동해삼(HS 030799)으로 되거나 또는 대구(HS 030250)가 절단되어 대구포(HS 030420)로 되는 경우 등은 제조·가공결과 세번이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인 변경이 일어난 것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본다.

2) FTA에서의 원산지 결정기준

(1) FTA 원산지결정기준 개괄

모든 FTA에서는 동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과 역외 산 물품의 우회수입 방지를 위한 특혜원산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기본적인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roduct Specific Rule)을 부속서에 따로 두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변형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를 다양한 방법을 조합하여 FTA마다 각기 독특한 원산지규정을 수립한다.

NAFTA,²²⁾ EFTA,²³⁾ 미·싱가포르 FTA, 한국이 체결한 FTA 등 대다수의 FTA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기준²⁴⁾이 사용된다.

주요공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과 함께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보조적인 기준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섬유나 의류제품 등 특정제품에 대한 품목별 기준에 자세히 나타난다.

보충기준으로 미소기준은 각 FTA별로 다르지만 제품의 조정가격, 공장도가격

22)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 자유 무역 협정.

23)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 자유 무역 연합.

24) 부가가치비율 계산법으로, 역외산 재료가 물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 기준으로 역내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공제법(build-down method)과 역내산 재료가 물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역내부가가치를 계산하는 직접법(build-up method)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을 기준으로 7~10% 범위 내의 비원산지재료의 포함을 허용하고, 섬유나 의류제품의 경우 가격이 아닌 중량기준을 적용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NAFTA는 조정가격의 7%, EFTA는 공장도가격의 10%, 한·칠레 FTA에서는 조정가격의 8%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누적원칙은 모든 FTA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부가가치기준 적용에 있어 추가되는 보충적인 기준으로 대부분 양자누적(bilateral cumulation)을 적용하는 반면, EFTA에서는 역내 회원국이 아닌 특정 국가들에 의해 공급된 재료도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을 적용하고 있다.

역외가공은 싱가포르, EFTA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초기단계에서 국내에서 생산한 후 나머지 공정의 일부를 주변국에 아웃 소싱하고 이를 다시 수입하여 가공한 후 최종제품을 수출하는 구조에서 초기 생산단계도 최종 생산단계와 함께 역내 부가가치 계산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FTA마다 역외가공이 인정되는 대상품목, 구체적인 요건 및 적용방법이 상이하다. 일례로 EFTA·싱가포르 FTA에서는 역외가공 조항을 부속서에 부록으로 따로 두고 있는데, HS 9단위 59개 품목의 경우 역외부가가치가 최종제품 공장도가격의 50%를 넘지 않으면 원산지를 인정하고, 이외 품목에 대해서는 역외공정으로 인해 추가된 부가가치가 최종제품 공장도가격의 10%를 넘지 않으면 원산지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HS 10단위 기준으로 130개 품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역외가공을 인정하고 있는데, 인정요건은 역외산 재료비율 40% 이하 및 역내산 재료비율 4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FTA 원산지결정기준 유형

FTA에서의 원산지규정은 크게 2가지 유형 즉, 유럽연합(EU)의 PANEURO²⁵⁾와 NAFTA 모델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동아시아는 2가지 유형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두 방식 모두 역내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수입 방지와 외국인 직접투

25) PANEURO(Pan-European)형 FTA는 EC, EFTA국가, 중동부 유럽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FTA를 말하며, EC·불가리아 FTA, EC·체코 FTA, EFTA·터키 FTA 등 50여 개가 있다.

자 유치 확대를 위해 원산지규정을 복잡하고 까다롭게 설정해 왔다(표2-7참고). PANEURO 유형의 경우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특혜원산지협정안을 조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여타 협정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1997년 이후 PANEURO 유형이 EU와 체결되는 신규 FTA 국가들의 원산지규정에 적용되고 있는데, 예외조항을 포함시킨 HS 4단위의 세번변경기준과 누적기준을 많이 이용하면서도 특정공정기준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²⁶⁾ 무엇보다도 PANEURO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수입산 완부자재 가치(MC)와 공장도가거래(ex-works)가격을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최소기준은 상대적으로 높고 누적조항도 양자누적을 비롯한 유사누적을 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NAFTA 유형은 NAFTA 회원국과 주요 국가들 간의 FTA 체결에 적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HS 4단위 변경을 주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보충적으로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정 공정기준은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NAFTA 유형은 예외나 보충기준으로 최소허용기준에 대한 수준은 낮으나, 예외품목이 많으며 롤업(roll-up)원칙에서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누적조항은 양자누적만을 적용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편 아시아의 경우 고유한 모델이 없어 PANEURO와 NAFTA 유형이 혼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FTA체결이 다각적으로 진행되면서 PANEURO나 NAFTA 유형과 같이 동아시아 국가의 원산지규정 모델을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²⁷⁾

26) 권율, 정재완, 김완중, 권경덕. 『한·ASEAN 원산지규정 연구』, 2005. pp.123-125.

27) 양효정, “한·중 주요 산업별 원산지규정 비교분석”,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13.

<표2-7> FTA 원산지 결정기준 유형 비교

유럽의 PANEURO 유형	북미지역의 NAFTA 유형
유럽위원회이 원산지규정 조화노력으로 동일한 형태를 취함(1977년부터 시행)	원산지결정기준이 엄격, 복잡하여 과도한 행정비용 발생
역내국가에 대해서는 최소기준, 몰업 원칙, 누적기준 등 원산지요건을 완화, 역외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폐쇄형 구조 -최소허용기준: 다소 높은 수준과 섬유·의류 예외 - 몰업 원칙: 전 품목 대상 - 누적기준: 양자+유사+완전	미국·요르단, 미국·이스라엘 FTA에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아닌 부가가치기준 적용 - 7% 일반적, 유제품 등 예외 다수 - 자동차 제외 - 양자누적(NC방식)
HS 4단위 변경 위주	HS 2와 4단위 변경위주
부가가치기준은 MC에 기초 하여 30~50% 기준채택	부가가치계산은 RVC 기준 채택 * 자동차: 다른 품목보다 높게 책정
가격기준: Ex-Works	가격기준: 다양
기술 테스트: Positive	구순 테스트: 보충, 예외
1977년 이후 EU 등과 되는 FTA에 적용	주로 미주지역의 적용. 미주자유무역지대 원산지 모델 채택 가능성
EC·EFTA, 중동부 유럽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FTA로 EC·불가리아 FTA, EC·체크 FTA, EFTA·터키 FTA 등 50여 개	NAFTA, 미국·칠레, 멕시코·코스타리카, 멕시코·칠레, 칠레·캐나다, 멕시코·콜롬비아·베네수엘라, 한국·칠레 등

자료: KIEP 연구보고서 2008-2009년.

Ⅲ. 韓國과 中國 原產地規定의 比較分析

1. 韓國의 原產地規定

1) 한국의 원산지규정 관련 법률체계

한국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법률체계는 특혜원산지규정인 관세법²⁸⁾과 비특혜 원산지규정인 대외무역법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그림3-1참고), 기타 여러 가지 법률에서 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관세법 제53조 4의 5항에 따르면 “당해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국가, 당해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새로운 특성을 부여한 행위를 최종적으로 행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 한다.”고 원산지 판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에 위 조건에 최소한의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함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및 최소가공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대외무역법 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상세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외무역법 및 시행령

일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판정 및 확인에 관한 기본법으로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은 원산지 표시대상물품, 원산지 세부표시방법, 세부판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관세법령, 규칙

28) 관세법상 제229조(원산지결정기준),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동법 시행규칙 74조 내지 제77조는 다자간 특혜규정에 해당되며, 일반적 특혜제도를 위한 규정에는 제76조(일반특혜관세 적용기준) 제3항에 의거하여 제정된 최신키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 제5조(원산지규정) 및 별지서식(원산지증명서)이 있다.

수입물품의 관세부과·징수, 특혜관세부여를 위한 원산지 결정 및 확인 및 원산지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제한을 정하고 있다. 관세청 고시로서 원산지규정 운영에 관한 고시에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표시 관련사항과 관세법령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3) FTA협정, FTA 관세특례법령·규칙 등

- 한·칠레 FTA

한·칠레정부간 FTA협정 및 이행법률, 한·칠레 FTA이행법령·규칙, 한·칠레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특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된다.

- 한·싱가포르 FTA

한·싱가포르 정부간 FTA협정 등 FTA체결 대상국과의 협정, FTA 관세 특례법령

(4) 특혜관세별 원산지결정기준

- 한·칠레 FTA협정 및 한·싱가포르 FTA협정에서는 FOB가격기준 45%부가가치가 수출국에서 발생한 경우 원산지를 인정토록 하여 실제 FOB가격 대비 50%에 육박하는 부가가치창출을 요구하고 있다.

- FTA협정의 경우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기준(45%, 50%, 60%) 이외에도 HS 변경기준(2, 4, 6, 8 단위), 가공공정기준 또는 이들의 혼합기준을 선택사용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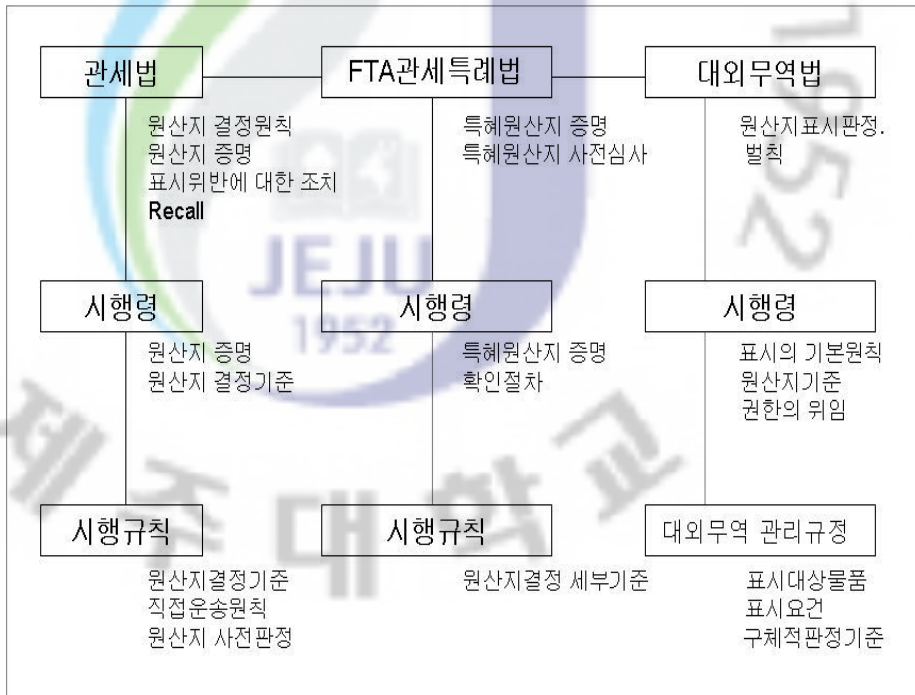
- 특혜관세적용을 위한 대부분의 협정에서는 FOB기준 50%이상의 부가가치를 최종적으로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프리카 등 발전도상국에 대해서는 10%이상의 특례기준을 두기도 한다. FTA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된다.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관세부과에 필요한 원산지확인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혜원산지규정에는 관세법 외에도 FTA 관세특례법,²⁹⁾ 한·칠레 FTA 이행에 관

29)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한 특례법,³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³¹⁾등이 포함된다. 관세법상특례를 정하는 FTA 관세특례법은 특혜원산지 증명, 확인절차 및 벌칙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표 3-1> 한국의 원산지 법령 체계도



조미진 외,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산업을 중심으로』, KIEP 대외정책연구원, 2008. p.23.

대외무역법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판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비특혜원산지규정에는 대외무역법외에도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 관한 법, 식품위생법 등이 포함된다. 농수산물품질 관리법령은 농수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원산지표시규정을 별도로 두어 수입물품은 물론 국내산 물품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30)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31) 북한산물품에 대한 무관세대우를 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령상의 규정에는 시행령 제50조(다른 법률의 운용),통일부의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고시』,관세청의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고시』(제13조 내지 제25조)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물은 제3조에서 내외국물품을 불문하고 원산지, 가격, 품질 등 모든 상품표시사항의 허위 또는 기만적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식품위생법도 제11조에서 허위표시를 금지하고, 식품 등 표시기준³²⁾에서 제조업체명과 그 소재지의 표시의무, 표시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2) 한국의 원산지규정의 특징

표<3-2>은 한국이 현재까지 체결하여 발효 중인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FTA 등 4개 FTA의 원산지규정을 상호·비교한 표이다. 각 FTA 협정문에 나타난 원산지규정을 검토해 본 결과, 기본적으로 표현이나 용어상의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완전생산기준

한국은 특혜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경기준을 기본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실질변경으로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협정문 체제는 다소 상이해,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미 FTA는 협정문과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EFTA FTA와 한·ASEAN FTA는 부속서로만 정하고 있다. 이는 양자간 FTA와 다자간 FTA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미 FTA를 제외한 4개의 FTA에서는 원산지규정 장(Chapter)을 통해 FTA 상의 특혜관세혜택을 받는 상품을 정하는 기준만을 규정하고 그 외의 절차적인 내용은 모두 통관절차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규정 장에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상품의 기준뿐만 아니라 이 상품들에 대한 신청절차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는 또한 섬유 및 의류 장(Textile and Apparel Chapter)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완전생산기준은 일부 농업과 광업제품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한 평가기준이지만, 오늘날과 같이 투자와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활발한 세계화시대에서는

³²⁾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03-2007호 (2003.5.23).

<표 3-2> 한국 FTA에서의 원산지규정 비교

구분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FTA
원산지상품				
-완전생산기준	o	o	o	o
-실질변형기준				
품목별 원산지기준	o	o	o	o
불인정공정	o	o	o	o
누적기준	o	o	o	o
미소기준	o	o	o	o
세트	x	x	o	x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o	o	o	o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 재료와 용기	o	o	o	x
수송을 위한 포장 재료와 용기	o	o	o	x
중간재	o	o	x	x
중립재(간접재료)	o	o	o	o
직접운송(환적)	o	o	o	o
미조립 및 분해된 상품	x	o	x	o
개성공단 원산지 특혜조항	x	o	o	o

자료: 조미진 외,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규정 비교』 자료를 인용. p.25.

적용대상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칠레 FTA와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실질적으로 완전 역내산은 아니지만 역내산 인정 범위의 확대와 경제통합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완전 역내산으로 간주되는 물품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수입품이 완전히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완전생산기준은 한국이 체결한 5개의 FTA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정의 하였다. 역내에서 생산된 광산물, 제배·수확된 농산물, 수렵 또는 어로 작업에 의해 획득한 물품 등 1차 산업 생산품이 완전생산기준의 적용을 받은 주요 대상이 된다. 특이한 것은 한·EFTA FTA의 경우 명시적으로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이 이용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냉장 쇠고기(HS 0201)의 경우 쇠고기 생산을 위해 이용된 원재료 중 제1류(산 동물)와 2류(육과 식용육)가 수출국에 완전 생산된 경우 수출국의 원산지를 인정하였다. 이는 원칙적으로 완전생산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EFTA FTA에서 1차 상품에 빈번하게 이용되었다.

수산물의 경우 5개 FTA 모두가 영해 내에서 획득한 것에 대해 선박의 국적 여부를 막론하고 연안국을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영해 밖의 공해상에서 획득한 수산물이나 선상가공품에 대해서도 자국산 선박이 획득하였다면 원산지를 인정한다. 하지만 선박의 국적을 결정짓는 요건에 대하여 인정하는 기준으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ASEAN 그리고 한·미 FTA에서는 기국(船籍)요건(vessel flying the flag of a Party)과 등록요건(vessel registered or recorded with a Party)을 동시에 만족될 경우만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인정한 반면에, 한·EFTA FTA에서는 기국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EFTA FTA의 경우 한국 혹은 EFTA 회원국 수산업자가 임차한 선박을 이용하여 공해상에서 획득한 수산물을 상대국에게 수출할 때 당 선박이 자국국기를 계양했다면 상대국으로부터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표 3-3>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원산지기준의 비교

구분	완전생산기준	자국선박 요건
한·칠레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간주기준	기국(船籍)요건+등록요건
한·싱가포르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간주기준	기국(船籍)요건+등록요건
한·ASEAN	완전생산기준	기국(船籍)요건+등록요건
한·EFTA	완전생산기준	기국(船籍)요건
한·미국	완전생산기준	기국(船籍)요건+등록요건

자료: 각 협정문 참고.

또한 영해(territorial sea)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도 각각의 FTA는 다소 상이한 정의를 내린다.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에서 잡은 수산물의 원산지 판정과 관련해서는 기국주의와 연안국주의가 맞서고 있다. 한·칠레 FTA와 한·미 FTA에서는 연안국주의를, 한·EFTA에서는 기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³³⁾

(2) 실질적 변형기준

한국이 체결한 5개 FTA에서 실질적 변형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주요 결정기준인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그리고 특정공정기준이 모두 이용된다. 물품의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선택적으

33) 한·칠레 FTA에서 칠레의 EEZ는 자국의 영역(territory)에 포함됨.

로 사용(선택기준: alternative rule), 혹은 약자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조합기준(combination rule/hybrid rule)을 품목에 따라 적용된다. 특정 공정기준은 섬유·의류제품 등 일부 품목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데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주로 다른 기준과 결합하여 사용되거나 선택기준으로 이용되는 일반적이다.

가)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은 한국이 체결한 5개 FTA에서 모두 주요한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이용된다. 세번변경 품목별로 2,4,6단위의 변경이 적용되며, 협상대상국가의 산업구조, 경쟁력, 투자, 그리고 교역관계를 반영하여 동일품목의 경우에도 다른 세번변경 결정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세번변경기준의 적용한계로 인해 원산지 결정에 독자적 기준으로 이용되기보다는 부가가치기준 및 특정 공정기준을 병행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NAFTA 방식의 원산지규정이 많이 반영된 한·칠레, 한·미,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세번변경기준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4단위보다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여 경직된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한·ASEAN 및 한·EFTA FTA에서는 세번변경기준이 4단위 적용비중이 높고 다른 결정기준과 선택으로 운용됨으로써 보다 유연한 방식이 적용된다.

나)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비율 산출에 필요한 기준가격, 선적공식 및 원산지를 인정하는 품목별 부가가치비율은 FTA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기준가격과 관련하여 한·칠레, 한·싱가포르 그리고 한·ASAEN FTA에서는 부가가치계산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본선인도가격(FOB price)이 사용되는데 반해, 한·ASAEN FTA에서는 공정도가격(ex-works price)이 사용되며, 한·미 FTA에서는 조정가격(adjusted value)이 기준가격으로 이용된다.

부가가치비율 산정방법으로는 한·칠레, 한·미, 한·ASAEN FTA에서는 수출업자

가 집적법(built-up method)과 공제법(built-down method)³⁴⁾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한·미 FTA의 자동차 제품과 관련해서는 집적법과 공제법 외에도 순원가법이 선택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³⁵⁾ 반면에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공제법만이 허용되며, 한·ASAEN FTA의 부가가치비율 선정은 MC 방식을 이용한다. 각각의 FTA에서 부가가치의 허용기준은 품목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한·싱가포르 FTA에의 경우 중계무역 국가인 싱가포르의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주로 45~55%의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기준을 요구하며, 국내산 재료의 비율을 산정하여 이용하는 한·ASAEN FTA의 경우 품목 별로 40~70%(공제법 환산시)의 기준이 적용된다.

원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추가가공이 이루어진 후 이를 사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한 경우, 역내 추가가공으로 수입된 반제품이 역내산으로 원산지가 변경된 때에는 roll-up 방식을 적용하여 100% 역내산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역내 추가가공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역내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ASAEN 및 FTA에서는 역내의 추가가공의 부가가치를 제외한 수입반제품 가격이 비원산지 재료가격으로 산정되는 반면에 한·ASAEN의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국내 부가가치에 대한 공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특정공정기준

한국이 체결한 5개국의 FTA에서 특정 공정기준은 주로 섬유 의류제품에 적용되며, 독립적으로 이용되기 보다는 세번변경기준과 병행하여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물(HS 50~60류)에 대해서 한·칠레, 한·싱가포르 FTA에서 2단위 세번변경

34) 각각의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된다.

(i) 공제법

$$RVC = \text{FOB} - \text{VNM} / \text{FOB} * 100$$

(ii) 집적법

$$RVC = \text{VNM} / \text{FOB} * 100$$

35) 한·ASAEN FTA에서는 부가가치를 산정할 때 당사국은 집적법과 공제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당사국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계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적어도 6개월 전에 모든 당사국에게 통보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일어난 경우 원산지를 부여하며, 한·ASAEN FTA는

- (i) 원재료의 세번변경이 일어나고,
- (ii) 염색과정이 적어도 두 가지의 준비과정을 거쳐 수출국에서 수행되며,
- (iii) 공정에 이용된 비염색 혹은 printing 이전 직물의 가치가 공장도가격의 50%를 넘지 않으면서,
- (iv) 최종작업이 수출국에서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를 인정한다는 주요 공정에 대한 수행을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사용한다.

의류(HS 61~62류)의 경우에는 한·칠레, 한·미, 한·싱가포르, 한·ASAEN 등 FTA에 재단 및 봉제가 역내에서 이루어지고, 2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원산지가격을 부여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된다. 특히 한·미 FTA, 한·칠레 FTA의 경우 원산의 생산에서부터 직물, 의류로의 전환이 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yarn-forward³⁶⁾나 fibre-forward가 요구되는 보다 엄격한 원산지규정이 적용된다.

(3) 보충적 원산지 규정

이밖에도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을 보완하고 결정기준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보충적 원산지규정으로는 미소기준, 누적기준, 최소공적기준, 역외가공,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특례조항 등이 이용된다. 최소허용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세번변경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가격의 8~10% 미만일 때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보충적 원산지규정으로, 한국이 체결한 5개 FTA에서 모두 이용되었다. 한·칠레 FTA의 경우 8%를, 나머지 FTA들은 10%의 최소허용기준이 도입되어 사용되었다. 섬유·의류 제품의 경우 금액이 아닌 중량 기준으로 역시 8~10%의 역외산 원재료가 허용되며, 각 협정문에 따라 기초 농산물과 가공농산물에 대한 최소허용기준의 적용 방법이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³⁷⁾

또한 한국이 체결한 5개 FTA 중에서 최초로 서명·발효된 한·칠레 FTA와 추

36) 원사를 원산지 기준으로 삼는 미국만의 독특한 제도임.

37) 양효정, “한·중 주요 산업별 원산지규정 비교분석”,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12. pp.19-20.

후에 논의하기로 합의한 한·미 FTA를 제외한 나머지 3개 FTA에서는 개성공단
에 대한 특혜조항을 포함하였다.

한국이 개성공단을 FTA 협정문에 포함하는 방식은 역외가공을 통해 개성공단
에서 수행된 공정에 대한 원산지 인정을 받도록 하는 방법과, 개성공단을 타깃으
로 하는 특혜조항과 역외가공조항이 모두 이용되며, 한·ASAEN FTA 상품 협상
의 경우 ASAEN 회원국들은 각각 HS6단위 기준으로 총 100개씩의 개성공단 생
산제품에 대한 양해품목을 전달하여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인정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밖에 누적기준 직접운송 및 환적에 관한 간접재료에 관한 조항, 부속품, 예
비부품 및 공구와 관련한 규정 등 원산지규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규정을 집행
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보충적 원산지 규정들이 추가
적으로 널리 이용된다.³⁸⁾

2. 中國의 原產地規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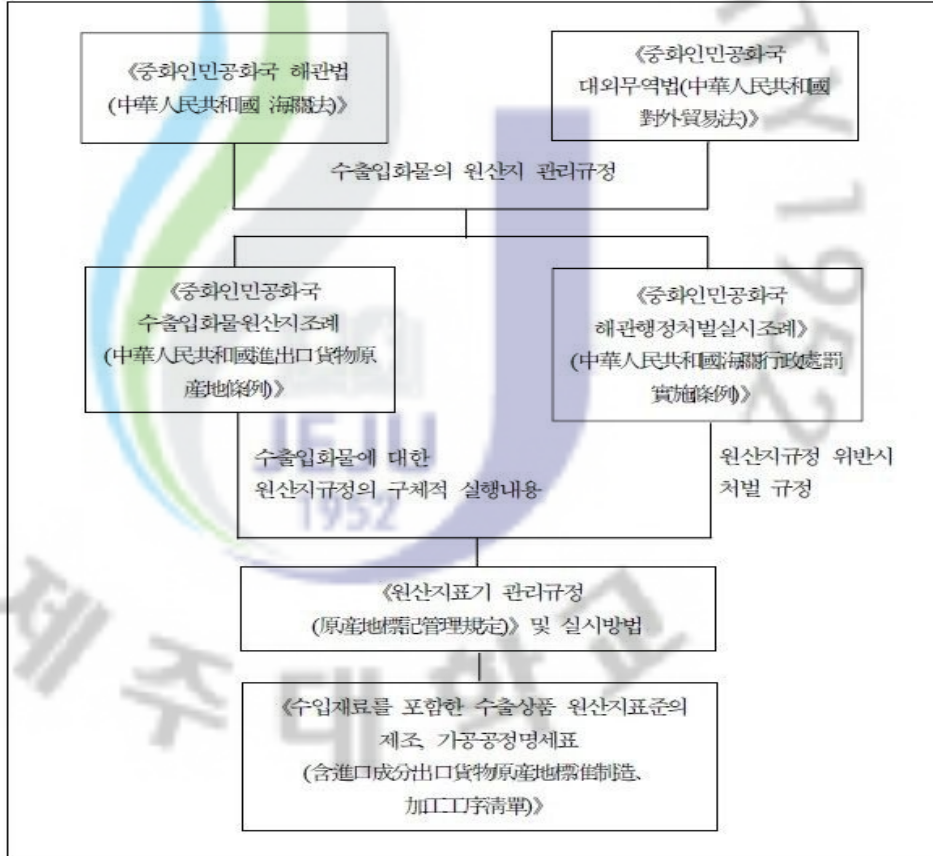
1) 中國의 原산지규정 관련 법률체계

中國의 原산지규정을 關장하는 最上位법은 中華人民共和國 對外貿易법과 中華
人民共和國 海關법이다. 이 두 법은 全國人民代表大會의 常務委員會에서 制定·반
포하였다.³⁹⁾ 對外貿易법에서는 수출입貨物에 對한 原산지 管理를 한다는 事實만
을 나타내고 具體적인 施行조례는 國무원에서 制定할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中
華人民共和國 海關법에서도 수출입貨物의 原산지는 國家의 關連 原산지규정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具體적인 시행규정으로서 國무원이 制定한 “中華人民
共和國 海關 수·출입貨物 特혜原산지 管理規定”에 의하고 있다.

38) 최난균·정형곤·김한성, “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향”, 연구보고서,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39) 范長軍, 鄭友德, 『論我國原產地名稱法製制定』, 2006.

<표 3-4> 중국의 원산지규정 체제도



자료: 조미진 외,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산업을 중심으로』, KIEP 대외정책연구원, 2008. p.30.

기존의 중국 원산지규정은 수출과 수입으로 각각 나뉘어 불완전한 법령으로 존재하여 통합 정리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관련 규정은 최종생산 또는 가공공정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고, 수입 원료나 부품의 일부나 전부를 가지고 중국 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제품도 중국을 원산지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4년 8월 18일 국무원 제61차 상무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貨物原產地條例)》를 통과시키게 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16호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개정 원산지조례는 최혜국대우, 반덤핑 및 반보조금, 세이프가드, 원산지표기 관리, 국가별 수량제한, 관세쿼터 등 非우대성 무역조치 및 정부조달, 무역통제 등 활동에 있어 수출입 원산지의 확정에 적용하게 되었다. 한편 특혜무역조치의 수·출입 원산지규정에 있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중국의 특혜 원산지 규정은 2007년 10월 현재 기 체결 되어 발효 중인 세 건의 FTA에서의 원산지 규정과 아태무역협정(舊방콕협정)을 들 수 있다.

정부구매법에서 국산제품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국산 제품을 판정하는데 원산지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구매법에서 ‘국산제품(本國貨物) 공정과 서비스’라는 것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국무원의 관련규정의 집행에 비추어 실시한다’고 하였다.⁴⁰⁾ 그러나 국무원이 현재 관련규정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여서 중국의 원산지규정의 결함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중국에는 특혜 원산지규정에 관한 법률이 없다. 경제의 빠른 발달로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어 일부 선진 국가들은 점차적으로 중국에 대한 특혜대우를 없애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보다 낙후된 국가에 특혜 원산지규정을 적용해 주면 중국과 최빈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특혜 원산지규정에 관한 입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 되고 있다.⁴¹⁾

40) 제10조: 정부구매는 국산제품공정과 서비스를 구매해야한다. 단 아래의 사항에 포함될 경우 이에서 제외 된다. 구입이 필요한 화물, 공정 또는 서비스가 중국 경내에서 취득할 수 없거나 합법적인 상업 조건으로 취득할 수 없을 경우,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할 경우, 기타 법률, 행정법규가 별도로 규정할 경우 등, 전 조항에서 지칭하는 국산상품공정과 서비스의 범위는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의해 집행 된다.

41)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令. 『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貨物原產地條例』, 2004..

<표 3-5> 중국의 원산지규정 구성

특혜 분야	비특혜 분야
-중·ASEAN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中國人民共和國 海關法)》 -제41조 수출입화물의 원산지 관리
-중·칠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규정	《정부구매법(政府採購法)》 -제10조 ‘국내제품’ 구매에 관한 규정
-중·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中國人民共和國進出口獲取原 產地條例)》
-아태무역협정 (舊방콕협정2002.1.1)	원산지표시 관리규정(原產地標記管理規定)》 및 실시방법 -2001년 국가출입국검역국 발표 수입재료를 포함한 수출 상품 원산지표준의 제조, 가공공정 명세표(含進口成分的出口貨物原產地標準製 造,加工工廠清單)》 -1992년 위경무부 발표

자료: 조미진 외,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산업을 중심으로』, KIEP
대외정책연구원, 2008. p.31.

한편, 중국과 홍콩간 체결된 경제동반자협정(CEPA)⁴²⁾는 중국이 WTO 가입한 후에 지역경제일체화를 추진한 첫 번째 지역자유무역협정이다. 2004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하여, 2009년 5월에 최신 “보충협정의 7”까지 5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커다란 경제성과를 거두었다.⁴³⁾ 원산지규정은 CEPA의 특혜조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초적인 도구이며, CEPA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동 협정의 실시과정 중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아직도 보완 하여야 할 곳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⁴⁴⁾

42) 중·홍콩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2003년 6월 체결을 필두로 매년 보충 협정을 통해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2009년 5월 11일에는 6차 보충협정(CEPAⅥ)을 체결하였다.

43) 여지나, “중·홍콩 CE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KIEP 지역경제포커스』 09-28호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09.7

44) 王超, “CEPA 原產地規則中的問題及其關山” 政法論議-第六期 ,2007.12 . pp.27-32.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

2005년 1월부터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16호

2004년 8월18일 국무원 제16차 상무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를 통과하여 현재 공포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溫家宝 (Wen JiaBao)
2004년 9월 3일

제1조 수출입화물의 원산지에 대해정확하게 확정하고 여러 가지 무역조치에 대해 효율적으로 실시하며 대외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는 최혜국대우, 반덤핑과 반보조금, 세이프가드, 원산지표기관리, 국가별 수량 제한, 관세쿼터 등 비우대성 무역조치 및 정부조달, 무역통계 등 활동에 있어 수출입화물 원산지 확정에 적용된다. 본 조례는 우대성 무역조치의 수출입화물 원산지확정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또는 참여한 국제조약, 협정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3조 완전히 1개 국가(지역)에서 획득한 화물은 해당 국가(지역)를 원산지로 규정하고 2개 이상 국가(지역)가 생산한 화물에 대해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원성한 국가(지역)를 원산지로 규정하다 .

제4조 본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완전히 1개 국가(지역)에서 획득한 화물이란 아래와 같다.

- (1) 해당 국가(지역)에서 출생 및 사육한 산 동물,
- (2) 해당 국가(지역)의 야외에서 붙잡거나 또는 수집한 동물,
- (3) 해당 국가(지역)의 산 동물에서 획득한 가공하지 않은 물품,
- (4) 해당 국가(지역)에서 수확한 식물과 식물제품,
- (5) 해당 국가(지역)에서 채굴한 광물,
- (6) 해당 국가(지역)에서 획득하고 본 조 제(1)항에서 제(5)항 범위에 포함 되지 않는 기타 천연적으로 생성한 물품,
- (7) 해당 국가(지역)의 생산과정에서 생성되어 방치해두거나 또는 회수하여 재료로 사용하는 폐기물,
- (8) 해당 국가(지역)의 수집한 복원 또는 수리가 불가능한 물품, 또는 해당 물품에서 회수한 부품 또는 재료,
- (9) 합법적으로 해당 국가의 깃발을 건 선박이 그 영해이외의 해역에서 획득한 해산물과 기타 물품,
- (10) 합법적으로 해당 국가의 깃발을 건 기공선박에서 본 조 제(9)항에서 열거한 물품을 가공하여 획득한 제품,
- (11) 해당 국가 영해이외에서 전문채굴권을 향유하는 해역 또는 해저에서 획득한 물품,
- (12) 본 조 제(1)항으로부터 제(1)항까지에서 열거한 물품을 완전히 해당 국가(지역)에서 생산한 제품,

제5조 화물이 완전히 1개 국가(지역)에서 획득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정할 경우 아래와 같은 미소한 가공 또는 처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 (1) 운송, 저장기간에 화물을 보존하기 위한 가공 또는 처리,
- (2) 화물의 하역에 편리하기 위한 가공 또는 처리,
- (3) 화물의 판매를 위한 포장 등 가공 또는 처리.

제6조 본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실질적인 변형에 대한 확정표준은 세척분류변경을 요한 표준으로 한다. 세척분류변경이 실질적인 변형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제조 또는 가공 제조공정 등을 보충표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표

준은 해관총서에서 상무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함께 제정한다.

본 조례 제1항의 세번분류변형이란 한 국가(지역)에서 비 해당 국가(지역)의 원재료에 대해 제조 기공 후에 획득한 화물이<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의 한 단계 의 세목 분류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본 조례 제1항의 증가백분율이란 한 국가(지역)에서 비 해당 국가(지역)의 원재료에 대해 제조, 기공 후에 생성한 부가가치부분이 해당화물 가치를 초과한 일정한 백분율을 말한다.

본 조례 제1항의 제조 또는 제조공정이란 한 국가(지역)에서 제조기공을 거쳐 화 물의 기본특징을 부여하는 주요한 제조공정을 말한다.

WTO의<非우혜원산지조하규칙>실시 전, 수출입화물원산지의 실질적인 변형의 구체적 표준에 대한 확정은 해관총서에서 상무부, 국가질량감독검험 검역총국과 함께 실제상황은 근거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7조 화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에너지, 공장건물, 설비, 기계와 공구의 원산지 및 화물의 구성부분 또는 조립부품으로 구성되지 않은 재료의 원산지는 해당 화물의 원산지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화물과 함께 수출입하는 포장, 포장 재료와 용기에 따라<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중 해당 화물과 동일하게 분류한 것은 그 포장, 포장 재료와 용기의 원산지에 대해 다시 단독으로 확정하지 않은 경우, 포장화물의 원산지는 그 포장, 포장 재료와 용기의 원산지로 규정한다.

화물과 함께 수출입하는 포장, 포장 재료와 용기에 따라<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중 해당화물과 같이 분류하지 않은 것은 본 조례의 규정의 따라 해당 포장, 포장 재료와 용기의 원산지를 확정한다.

제9조 정상적으로 분배한 종류와 수량에 근거하여 화물과 함께 수출입된 별지, 예비품, 공구와 소개 설명용 자료에 대해<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중 해당 화물과 같이 분류한 것은 그 별지, 예비품, 공구와 소개 설명용 자료의 원산지는 해당 화물의 원산지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당 부품,

예비품, 공구와 소개 설명용 자료의 원산지를 다시 별도로 확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물의 원산지는 그 부품, 예비품, 공구와 소개 설명용 자료의 원산지는 구 부품, 예비품 공구와 소개 설명용 자료의 원산지로 규정한다. 화물과 같이 수출입된 부품, 예비품 공구와 소개 설명용 자료가<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중 해당 화물과 같이 분류하였지만 정상적으로 분배한 종류와 수량을 초과한 것과<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중 해당 화물과 같이 분류되지 않은 것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별지, 예비품, 공구와 소개 설명용 자료의 원산지를 확정한다.

제10조 화물에 대한 임의의 가공 또는 처리가 중화인민공화국의 반덤핑, 반보조금과 세이프가드 등에 관한 관련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경우 해관은 해당 화물의 원산지를 확정할 때 이러한 가공과 처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제11조 수입화물의 수화인이<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과 관련규정에 따라 세관 신고시 본 조례규정의 원산지규정에 따라 수입화물의 원산지를 신고해야 하며 동일한 화물들의 원산지가 각각인 경우 별도로 원산지를 신고해야 한다.

제12조 수입화물을 수입하기 전, 수입화물의 수화인 또는 수입화물과 직접 관련된 기타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수입할 화물의 화물원산지에 대한해관의 예비확정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원산지 확정에 필요한 자료를 해관에 제출해야 한다.

해관은 반드시 원산지 예비확정에 대한 서면신청 및 필요한 전부의 자료를 접수한 당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본 조례규정에 따라 해당 수입화물의 원산지 예비확정에 대해 결정해야 하며 대외적으로 공포해야 한다.

제13조 해관은 반드시 신고를 접수한 후 본 조례규정에 근거하여 수입화물의 원

산지 예비확정결정시의 화물과 동일하며 본 조례규정의 원산지확정표준에 변화에 없는 것에 대해 해관은 해당 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재확정하지 않으며 해관의 심사를 통해 실제 수입화물이 예비확정결정시의 화물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관은 반드시 본 조례규정에 근거 하여 해당 수입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다시 심사 및 확정해야 한다.

제14조 해관은 수입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심사확정시 수입화물의 수화인으로 하여금 화물의 원산지증명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 수출국의 관련기국의 관련기구에 대하여 화물의 원산지를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대외무역경영자가 제출한 서면신청에 근거로 해관은<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제43조 규정에 따라 수입할 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원산지확정의 행정처분은 미리 할 수 있으며 대외에 공포해야 한다. 동일한 화물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적용해야 한다.

제16조 국가는 원산지표기에 대해 관리를 실시한다. 화물 또는 그 포장에 원산지를 표기한 것과 원산지표기가 명시된 원산지는 당연히 본 조례에 따라 확정된 원산지와 일치해야 한다.

제17조 수출화물의 방송인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산하의 각 지역 출입경 검사검역기구, 중국국제무역축진위원회 및 기타 지역 분화(이하발급기구라 약칭함)에 수출화물원산지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수출화물의 방송인이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발급기구에서 등록수속을 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화물의 원산지를 신고해야 하며 발급 기구에 수출화물원산지증명의 발급을 거절해야 한다.
수출화물원산지증명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가질량감독검증검역총국에서 국무원 기타 관련 부문, 기구와 함께 별도로 제정한다.

제19조 발급 기구는 수출화물 발송인의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규정에 따라 수출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심사 및 확인하고 수출화물원산지증명을 발급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출화물에 대해 반드시 수출화물원산지증명을 거절해야 된다.

수출화물원산지증명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가질량감독검증검역총국에서 국무원 기타 관련 부문, 기구와 함께 별도로 제정한다.

제20조 수출화물의 수입국(지역) 관련기구의 요구에 은하여 해관, 발급 기구는 수출화물의 원산지상황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심사상황에 대해 적시에 수입국(지역)의 관련 기구에 알려야 한다.

제21조 화물원산지확정에 사용되는 자료와 정보에 대해 규정에 따라 제공하거나 또는 해당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 단위, 개인의 허가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관, 발급 기구는 반드시 해당 자료와 정보에 대해 비밀로 해야 한다.

제22조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수입화물원산지를 신고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행정 처벌실시조례>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제23조 허위자료를 통하여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을 취득하거나 수출화물원산지증명의 위조, 변조 매매 또는 절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출입국검역기구 및 해관은 5,000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수출화물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변조, 매매 및 절도하여 이를 해관통행허기증거로 할 경우 벌금부과 범위는 화물가치 이하로 화물가치가 5,000위안 이하의 경우 5,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에 대해서 출입국검사검역기구 및 해관이 몰수하고 범죄구성과 관계가 있을 경우 법률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24조 수입화물의 원산지표기가 본 조례에 따라 확정된 원산지와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관에서 시정 명령한다.

수출화물의 원산지 표기가 본 조례에서 확정된 원산지와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관,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서 시정 명령한다.

제25조 수출입화물 원산지확정 업무인원들이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원산지 확정을 하거나 또는 알고 있는 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직권남용, 직무무시 및 사리도모의 부정행위를 할 경우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불법소득에 대해 몰수하며 범죄성과 관계가 있을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6조 본 조례의 아래 용어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획득이란 포착, 조업, 수집, 수확, 채굴, 가공 또는 생산 등을 의미 한다. 화물원산지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확정된 한 화물을 획득한 국가(지역)를 의미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국(지역)에서 원산지규칙과 관련요구에 근거하여 발급하고 해당 증명서에서 열거한화물이 특정한 국가(지역)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지적한 서면서류이다.

원산지표기는 화물이나 포장에서 해당 화물의 원산지를 명시한 문자와 도형이다.

제27조 본 조례는 200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1992년3월3일 국무원에서 발표한 <중화인민 공화국 수출화물원산지규칙>,1986년12월6일 해관총서에서 발표한<중화인민공화국해관의 수입화물원산지관련 잠정규정>을 폐지한다.

2) 중국의 원산지규정의 특징

중국은 2001년 12월 ‘수입상품 원산지 사전결정’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국내 원산지 관련 법규를 WTO의 원산지 규정에 일치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1) 완전생산기준

“산 동물”의 경우에 한국은 칠레와의 협정에서 당사국에서 출생 및 사육된 산 동물이란 표현을 사용했고, 중국은 해당국가에서 태어나고 사육된 산 동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따라서 타 지역에서 태어난 후 역내로 반입되어 사용된 동물은 완전생산기준에서 배제된다고 정의하였다. 동물은 포유류, 조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파충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포함하여 모든 살아있는 동물을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어떠한 품목을 일국에서 완전 생산된 품목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정의는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협정국 내에서 채굴된 광산물, 협정국 내에서 추수된 식물, 협정국에서 나고 자란 가축 및 이들로부터 생산된 제품, 협정국 내에서 수거된 중고 제품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고철 등 다른 국가들이 체결한 FTA협정문들과 유사한 범위에서 완전생산기준을 정의한다.

수산물에 대한 완전생산기준을 정의할 때에는 4개 FTA⁴⁵⁾ 모두 배타적 경제구역에서 채취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해당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배타적 경제구역 내에서의 경제활동이 용인되는 경우에 인정하는 단서조항이 있어 협정국의 국내법과의 관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하였다.

선박의 국적을 결정할 때에는 기국(船籍)요건 중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 국적을 인정하였다. 이는 기국요건과 동시에 만족해야 국적을 인정하는 한·ASEAN 혹은 한·미 FTA나 일본이 ASEAN 국가들을 상대로 체결한 FTA와 비교했을 때 다소 완화된 인정기준으로 여겨진다.⁴⁶⁾

45) 중·칠레, 중·ASEAN, 중·파키스탄, 그리고 중·뉴질랜드 FTA를 포함한다.

<표 3-6> 중국 FTA 원산지규정의 원산지기준의 비교

구분	완전생산기준	자국선박 요건
중·칠레	완전생산기준	기국(船籍)요건
중·ASEAN	완전생산기준	기국(船籍)요건or등록요건
중·파키스탄	완전생산기준	기국(船籍)요건or등록요건
중·뉴질랜드	완전생산기준	기국(船籍)요건+등록요건

자료: 협정문을 토대로 작성.

(2) 실질적 변형기준

중국이 체결한 FTA에서 실질적 변형을 판단하는 주요 방법으로는 부가가치기준이 이용된다. 중·뉴질랜드 FTA를 제외한 나머지 FTA에서는 특정 품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며, 두 개 이상의 결정기준이 함께 사용되는 결합기준이나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택기준이 적용된 품목도 전혀 찾을 수 없다.⁴⁷⁾

46) 김영숙, “한·중 FTA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무역학회지』, 제33권, 한국무역학회, 2008.

47) 王超, 涂遠瀾, 區域貿易安排下的原產地規則問題初探[A]中國法學會世界貿易組織法研究會 二零零七年年會論文集[C]. 2007.

<표 3-7> 중국의 기체결 FTA 원산지규정 내용 비교

구분	중·ASEAN FTA (부속서)	중·칠레 FTA	중·파키스탄 FTA	중·뉴질랜드 FTA
원산지상품 -완전생산기준	o	o	o	o
-실질변형기준	부가가치준 40%	부가가치기준 40%이상	부가가치기준 40%	세번변경기준
품목별 원산지기준	△	o	△	o
불인정공정	x	o	o	o
누적기준	x	o	o	o
미소기준	o	o	x	o
세트	x	o	x	o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o	o	o	o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 재료와 용기	o	o	x	o
수송을 위한 포장 재료와 용기	o	o	o	o
중간재	o	o	x	o
중립재(간접 재료)	x	x	o	o
직접운송(환적)	o	o	o	o
전시	x	o	x	o
검토와 수정	o	x	x	x

자료: FTA 협정문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가) 세번변경기준

중국이 체결한 4개 FTA에서 세번변경기준이 실질적 변형을 판정하기 위한 주요 결정기준으로 사용된 경우는 중·뉴질랜드 FTA가 유일하다. 중·뉴질랜드 FTA에서는 2단위, 4단위 그리고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이용되었고, 특히 4단위 세번변경기준은 주요 결정기준으로 모든 품목의 절반이 넘는 품목에서 사용되었다. 또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과 특정공정기준이 결합하거나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방법들도 많지만 몇몇 품목들에만 적용되었다.

한국은 아세안과의 FTA 원산지규정에서 HS 4단위와 6단위로 규정한 반면에 중국은 2단위와 4단위로 규정하여 원산지규정을 엄격하게 하였다.

중·아세안 FTA 원산지규정에서 HS 2단위, 4단위의 세번변형기준을 원칙으로 하였고, 중·칠레 FTA 원산지규정에서는 부가가치기준과 세번변경기준을 함께 사용하였고, 미소기준과 누적기준과 같은 보충기준을 규정하였다. 중·파키스탄 FTA 원산지규정은 부가가치기준만을 사용하였다. 현재 7차까지 진행된 중·호주 FTA 원산지규정 협상에서는 중국은 부가가치기준을 호주는 세번변경기준의 이용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진전에 난항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ASEAN FTA에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으로는 가죽과 모피 제품에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었으며, 연어와 청어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었다.

중·칠레 FTA의 경우 HS기준으로 농·축·수산물의 1~16류와 음료 및 주류를 포함하는 22류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그리고 가공 1차상품인 17~19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이용된다. HS 6단위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은 총 583개이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46개 품목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나) 부가가치기준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이용되는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중국이 체결한 4개 FTA에서 단일 공제법을 사용하여 규정하였다. 중·ASEAN FTA 경우 및 세번

변경기준을 적용받는 품목과 특정공정기준 적용을 받는 품목 이외의 대부분 품목에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며, 역내 부가가치 비중 40%이상에 대해서 원산지를 인정하는 40%기준이 적용된다.

중·파키스탄 FTA 원산지규정은 부가가치기준을 사용하였으며, 중·아세안 FTA에서와 같이 제품의 가격이 두 나라 내에서 가공된 후 최소 40% 증가할 경우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다.

중·칠레 FTA에서는 세번변경기준 적용을 받는 629개 품목이외의 4,595개 품목이 부가가치기준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40%기준이 확일적으로 적용되는 중·ASEAN FTA나 중·파키스탄 FTA와는 다르게 50% 부가가치기준을 적용받는 품목은 모두 2,289개이며, 나머지 2,306개 품목은 40% 부가가치기준을 적용받는다.

중·뉴질랜드 FTA에서 부가가치기준은 주요 결정기준이 아닌 세번변경기준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었으며, 그나마 부가가치기준이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는 총4개 품목에 불과하다.⁴⁸⁾ 주로 세번변경기준과 혼합기준으로 사용되거나 선택기준으로 사용되면서 세번변경기준을 보완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부가가치 수준도 품목의 특성을 고려한 30% 부가가치기준이 단독으로 적용되는 품목에서 50%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품목까지 여러 가지 수준의 부가가치기준이 이용된다.

중·아세안 FTA 원산지규정은 역내국가로부터의 내용물 비중이 40%이상인 경우 원산지를 확정하고 있다. 최종 제조공정이 역내 회원국내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 한하여 역외국으로부터의 원재료나 부품 및 생산품의 총가치가 해당제품 가격의 60%를 넘지 않을 경우 원산지로 인정한다.⁴⁹⁾

다) 특정공정기준

중국이 체결한 FTA에서 특정공정기준이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이용된 경우는 중·ASEAN FTA와 중·뉴질랜드 FTA에서만 관찰되며, 나머지 FTA에서는 전혀

48) 부가가치기준이 단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품목은 HS320611, 320112, 330125, 340313이다.

49) 김영숙, “한·중 FTA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3권, 한국무역학회, 2008.

이용되지 않는다. 중·ASEAN FTA의 경우, 면직물류인 52류와 편물 의류 기타 섬유제품에 특정 공정기준을 이용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된다. 보다 자세한 각각의 공정은 중·ASEAN FTA 원산지 규정 첨부B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설명하였다.

중·뉴질랜드 FTA의 경우 특정 공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빈번히 사용되며, 몇몇 품목에서는 선택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함께 사용된다. 이러한 방법은 필름 등 사진용 재료와 의류제품에서 주로 이용되는데, 원산지 인정을 위한 특정 공정에 관한 내용과 범위는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세밀하게 적시하였다.⁵⁰⁾

(3) 보충적 원산지규정

일반적인 FTA 원산지규정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체결한 FTA 원산지규정에서도 원산지규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또한 원산지규정을 적용한 경우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보충적 원산지규정이 도입되었다.

먼저 세번변경기준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미소기준의 경우, 세번변경기준이 주요 결정기준으로 사용된 중·뉴질랜드 FTA와 부분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이용된 중·칠레 FTA 원산지규정에 포함된다. 중·칠레 FTA는 세번변경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비원산지 원료의 가치가 해당 제품 가치의 8%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며, 중·뉴질랜드 FTA의 경우 10%까지 허용한다.

원재료의 누적에 있어서 4개 FTA가 모두 양자누적조항을 적용한다. 중·ASEAN FTA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중국과 ASEAN간의 양자간 FTA이지만 실제로는 총11개국에 참여하는 다자간 FTA 성격도 있어 중·ASEAN FTA협정문에서는 ‘완전누적(full cumulation)’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중국과 ASEAN 10개국 간의 양자누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밖에도 직접운송·환적 조항, 수송을 위한 포장 재료와 용기에 대한 규정,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에 대한 조항 등도 4개 FTA에서 유사하게 규정된다.

50) 최난균·정형근·김한성, 『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향』 연구보고서,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불인정공정의 경우 4개 FTA에서 모두 다루어지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중·ASEAN FTA에서는 매우 간략하게 불인정공정 기준에 대해 언급한 반면에, 중·칠레 FTA 중·뉴질랜드 FTA의 경우 매우 구체적인 사안을 불인정공정 내용으로 포함하여 그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표 3-8> 중국 FTA에서의 보충적 원산지규정

구분	중·ASEAN FTA (부속서Ⅲ)	중·칠레 FTA	중·파키스탄 FTA	중·뉴질랜드 FTA
불인정공정	o	o	o	o
누적	o (완전누적)	o (양자누적)	o (양자누적)	o (양자누적)
미소기준	x	o(8%)	x	o(10%)
세트	x	o	x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o	o	o	o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 재료와 용기	x	o	x	o
수송을 위한 포장 재료와 용기	o	o	o	o
중간재	o	o	x	o
중립재(간접재료)	x	x	o	o
직접운송(환적)	o	o	o	o

자료: 조미진 외,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산업을 중심으로』, KIEP
대외정책연구원, 2008, p.33의 내용을 기초로 보완하여 작성.

3. 韓國과 中國의 原產地制度 比較

1) 원산지 관련 규정의 비교

(1) 법률체계의 비교

한국의 원산지 관리 법률체제는 비특혜 원산지제도인 대외무역법과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서 업종에 따라 표시 관리를 하고 있다. 대외무역법에 제 33조~38조에서 원산지에 관한 규정을 정해놓고 있다.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외국산물품 등을 국산 물품 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등의 내용으로 자세하게 규정하였다.

또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손상 또는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원산불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정 조치를 명하거나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규정⁵¹⁾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의 원산지규정의 관한 최상위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다. 구체적인 시행규정으로서 일반 원산지 관리 규정인 국무원이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원산지조례』와 특혜 원산지 관리 제도인 세관총서가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물품 특혜원산지 관리규정』이 있다.

(2) 원산지 제정목적의 비교

한국 대외무역법의 제정목적은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함이다. 한국 관세법의 제정목적은 관세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과를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원산지조례의 제정목적은 수·출입물품의 원

51) 대외무역법 제42조 제3항.

산지를 정확하게 확정하고 여러 가지 무역조치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며 대외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참고로, WTO의 원산지 관리협정의 제정목적은 다자간 무역협상이 세계무역의 자유화 및 확대를 증진하고, GATT의 역할을 강화하며, 발전하는 국제 경제 환경에 대한 GATT체제의 대응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아래와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 1994년도 GATT의 목적을 증진함.
- 국제무역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
-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함.
- 회원국의 권리를 무효화하거나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함.
- 원산지규정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관행상의 투명성을 제공함.
- 원산지규정이 공정,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일관되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마련되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함.
-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제 및 절차의 이용가능성을 인정함.
- 원산지규정을 조화시키고 명확하게 함.⁵²⁾

(3) 적용범위의 비교

한국 대외무역법의 원산지 관리제도는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물품 중에서 지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한국 관세법의 원산지 관리제도는 모든 수출·출입 물품의 관세부과·징수와 통관관리에 적용하고 있다.

중국 원산지조례의 적용범위는 최혜국대우, 반덤핑과 반보조금, 세이프가드, 원산지표시관리, 국가별 수량 제한, 관세 쿼터 등 비특혜 무역조치 및 정부조달, 무역통계 등 활동에 있어 수출입 물품 원산지 확정에 적용된다. 하지만 특혜무역의 수출입물품 원산지확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국 특혜 원산지규정의 적용범위는 특혜 원산지규정의 적용범위는 특혜 무역협정 수출입물품 원산지에 대한 관리에 적용하고 있다.

52) 여신문, “한·중 원산지 관리제도 비교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p.62-63.

WTO 원산지 협정의 적용 범위는 최혜국 대우, 반덤핑 및 상계관세, 긴급수입 제한조치, 원산지 표시요건 및 모든 차별적인 수량 제한 또는 관세쿼터 등의 적용에서 원산지가 비관세 장벽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무역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무역정책수단에 사용되는 모든 원산지규정을 포함 한다. 또한 동 원산지규정은 정부조달 및 무역통계에 사용되는 원산지규정도 포함된다.

(4) 관리기구의 비교

한국 대외무역법의 관리 및 실행 기구는 대한민국 지식경제부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한국 관세법의 주무 부처는 대한민국 관세청이며 일선 시행서는 세관이며, 원산지확인위원회가 한다.

중국 원산지조례의 관리 및 실행 기구는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와 각 지방의 세관이 실행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와 국가품질시험 검사감독검역총국과 함께 협동 관리한다. 중국 특혜 원산지규정의 주무기구는 중국 세관총서이며,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원산지를 판정 관리하는 기구는 각 지방 세관이다.

2) 원산지 표시방법의 비교

중화인민공화국 원산지조례는 대상물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시행령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물품을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원산지조례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한국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원산지표시의 글자, 활자체, 위치 등에 대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 수입세트 물품, 용기의 원산지표시,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방법의 세부사항, 면제, 사전확인 및 이의제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출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이 이와 다르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3) 원산지 판정기준의 비교

완전생산물에 대해서 양국 모두 해당국가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동물, 식물, 수산물 및 이들의 제조, 가공품이라고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 변형에 대해서도 한·중은 동일한 내용이다. 즉, 해당국에서 제조·가공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관과 상이한 세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뜻하며, 세번이 변경 되지 않는 경우는 제조·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원산지별 가격 누계가 높은 부가가치가 부여된 국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원산지조례와 한국 대외무역법 중의 수·출입물품 원산지 판정기준의 기본원칙은 일치하다.⁵³⁾ 즉,

- 수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원산지생산품)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실질적 변형)의 기준으로 판정한다.

-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원산지제도는 최종생산 또는 가공공정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고, 수입 원재료나 부품의 일부나 전부를 가지고 중국 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제품도 중국을 원산지로 한다고만 규정하였을 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조례 제6조에서 나오는 수출입 물품원산지의 실질적인 변형의 구체적인 표준 또한 세관총서에서 상무부,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과 함께 제정한다고 되어 있다.

한국은 국내 공정 거래 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출입물품 원산지 관리대상품목 중에서 농·수산물, 식물, 의료 용품, 향료, 화장품, 편지, 서적, 신문, 인

53) 한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와 중국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제3조.

쇄물 섬유, 유리, 철강, 자동차, 선박에 해당 되지 않는 물품이 적용되며, 한국에서 제조, 가공과정을 통해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코드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해당물품의 총 제조원가중 수입원료 수입 가격(CIF가격⁵⁴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이상인 경우나, 세번이 상이하지 않는 경우는 총 제조원가의 85%이상인 경우에 한국을 원산지로 본다.

중국은 이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르고 있어 85% 규정을 없다고 볼 수 있다.

4) 원산지 확인절차의 비교

중국은 원산지조례에서 확인·관리기구, 원산지증명서 제출, 원산지 증명서의 심사요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일한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중국 특혜원산지규정에서는 원산지 확인·관리기구, 원산지 신고 방법, 제출서류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증명서 신청서와 신청서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원산지 증명서 신청서류,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와 확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 기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수입자의 원산지 확인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원산지표시 확인 주관기관, 원산지의 표시·정정·말소 등 적절한 조치의 지시,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한국 관세법에서도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면제, 원산지 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확인 자료 제출,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 확인 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그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당해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54) CIF가격 :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가격(Cost Insurance and Freight).

한편 중국 특례 원산지규정상 직접운송은 당해 물품이 기타 국가나 지역을 통과할 때 물품의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처리 이외에 기타처리를 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물품이 기타 국가나 지역에서 머무른 시간에 상응하는 무역협정에서 규정한 기한을 초과 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당해물품이 기타 국가나 지역에서 임시 보관될 때 당해 국가나 지역 세관의 감독·관리를 받은 경우에는 운송 중 운송수단의 전환 또는 임시 보관을 불문하고 이 3가지 조건이 동시에 부합되어야 한다.

한국은 대외무역법 관리규정에서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물품이 비원산국 보세구역 등의 세관 감시 하에 환적 또는 일시장치가 이루어진 물품의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비원산국으로 수출하였던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전시목적에 사용 후 한국으로 수출한 물품의 경우, 이들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한국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5) 원산지규정 위반 벌칙의 비교

중국은 원산지 조례에서 허위자료를 통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취득하거나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의 위조, 변조, 매매 또는 절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출입국 검사검역지구 및 세관은 5000 元 이상 10만 元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변조, 매매 및 절도하여 세관을 통해 허가증거로 할 경우 5000 元 이하의 경우 5000元 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 이외 수·출입물품 원산지확정 업무담당자들이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원산지확정을 하거나 또는 알고 있는 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및 사리도모의 부정행위를 할 경우 법에서 따라 처벌하였다. 또는 불법소득에 대해서는 출입국 검사검역지구 및 세관이 몰수하고 범죄구성과 관계가 있을 경우 법률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는 중국 특혜원산지규정에서는 규정을 위반한 밀수행위, 세관의 감독관리 규정 위반행위 또는 『세관법』을 위반한 기타 행위에 대해서 세관은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

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대외무역법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한국인 것처럼 가장(假裝)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입물품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⁵⁵⁾

55) 여신문, “한·중 원산지 관리제도 비교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68.

IV. 韓國과 中國의 主要産業의 原產地規定

1. 섬유산업(제 54-55류) 원산지규정 비교

섬유산업은 소득수준 향상과 라이프스타일 등의 변화에 따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섬유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산업용 섬유의 개발로 시장창출이 가능한 잠재 산업이다. 현재 한국의 섬유산업은 그 위상이 점차 위축되고 있다. 반면 중국의 섬유산업은 개혁, 개방 이후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을 보여 왔으며, 면사, 면직물, 생산, 화학섬유, 의류 등의 분야에서는 세계 1위의 생산대국이다.

<표 4-1> 한국과 중국 양국의 섬유산업의 발전 단계

한국	중국
성숙기, 중후반, 제품차별화단계	성장기, 공정간 분업단계
직물: 성숙기 후반 내지 쇠퇴기 초반 화학섬유: 성숙기 초중반 산업용 섬유/기능성 염색가공/ 패션 디자인: 성장기 초반	화학 섬유, 화섬 직물: 성장기 초중반 천연 섬유직물, 천연 섬유: 성장기 후반을 지나 성숙기초반

자료: 김주한,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에 따른 한국 소재산업의 대응 전략” 인용, 2008.

1) 한국과 중국의 섬유산업의 원산지규정 현황

한국의 섬유산업은 기 체결 FTA에서 주요 수혜산업으로 인식되어왔다. 특히 한·미 FTA에서 섬유·직물 제품은 대표적인 수혜품목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따

라서 미국은 자국의 섬유산업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까다로운 원산지 결정기준을 섬유제품에 적용하여, 한국의 섬유·의류 제품이 미국시장에의 대량적인 진입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 FTA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만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ASEAN FTA에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비교적 느슨한 결정기준이 적용되었다. 한·칠레 FTA에서는 HS 2단위와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예외조항을 두고 주요공정을 명시하는 강력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많이 사용되었다.

제품별로 보면 섬유원료→섬유사→직물은 2단위 혹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었으며, 의류제품(62-63류)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주요공정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보다 엄격한 조합기준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기체결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세번변경에 적용이 제외되는 세번을 지정하는 품목(특히 한·미 FTA와 한·칠레 FTA)이 많으며, 이로써 세번변경기준이 대폭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전체적인 원산지기준을 도입하지 않아도 반드시 보호하여야 할 특정 품목에 있어서는 세번변경에 적용이 제외되는 세번을 포함시켜 품목에 원산지기준을 도입하는 엄격한 기준과 유사한 수입 억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중국의 섬유산업은 높은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체결 FTA에서 수혜산업으로 분류된다. 중국의 기체결 FTA에서의 섬유산업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한국의 기체결 FTA 원산지 결정기준보다 단순·명료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중국 섬유제품의 수출에 유리하다. 초기에 체결한 중·ASEAN FTA에서는 510320, 510330, 510400, 510531, 510539, 510540의 6개의 HS 6단위품목에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고, 520411, 520419, 520420, 520511 등 424개의 HS 6단위 특정 품목에 40%의 역내부가가치비율과 주요공정기준을 조합하여 적용하고, 기타 모든 품목에는 40%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을 적용하였다. 중·칠레 FTA에서는 51류, 54~63류와 5204~5212, 5301, 5306, 5309, 5311의 13개 HS 4단위 품목에 역내부가가치비율 50%이상 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에 품목에 대해서는 역내부가가치비율 40%이상 기준을 적용하였다.

나중에 체결한 중·뉴질랜드 FTA와 중·페루 FTA에서는 세번변경기준이 주로 적용되었으며, 일부 품목에 주요공정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중·뉴질랜드 FTA에서는 5001~5003, 5103, 5202에는 완전생산, 기타 제50~58류에는 주로 4단위 세번변경, 제59~60류는 2단위 세번변경, 제61~63류는 2단위 세번변경에 제단과 봉제의 주요공정기준이 조합되어 사용되었다. 중·페루 FTA에서는 5003, 5130, 5202에는 완전생산기준, 기타50~59류에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이 단독 혹은 혼합되어 적용되었다. 제60류에는 40%혹은 50% 부가가치기준 그리고 제61~63류에는 40%혹은 50%의 부가가치기준에 제단 및 봉제의 주요 공정기준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조합기준이 적용되었다.

제품별로 보면 천연섬유와 섬유원료에는 완전생산기준과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었으며, 의류제품(61~63)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주요공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엄격한 조합기준이 적용되었다.

2) 한·중 섬유산업 기체결 FTA 섬유산업 원산지규정의 비교

섬유제품에 대한 중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한국에 비해 단순한 편이다. 중·칠레 FTA에서는 51류, 5204~5212, 5301, 5306, 5309, 5311, 54~63류는 역내부가가치비율이 50%이상일 경우, 이외 품목에 대해서는 역내부가가치 비율이 40%이상일 경우, 중·ASEAN FTA에서는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0%이상일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섬유제품에 대해서 주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한다. 섬유원료, 섬유사, 직물은 2단위 혹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고, 의류제품 (61~62류)은 세번변경기준과 주요공정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하는 조합기준이 적용된다. 한·칠레 FTA에서는 한·ASEAN FTA에서와 달리 원사기준(yarn forward)⁵⁶⁾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에 미소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과 중국 간에 FTA 원산지규정의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섬유산업에 한해 한·칠레, 한·ASEAN FTA에서는 세번변경

56) 섬유·의류 제조공정은 대체로 '섬유원료(fiber)→원사(yarn)→제직(weaving)→편직(knitting)→제단(cutting) 봉제(sewing)→날염(printing)'을 거치게 되는데, 원사기준(yarn-forward rule)은 원사이후의 공정이 모두 당사국에서 이루어져야만 원산지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패브릭포워드기준(fabric-forward-rule)은 제직부터 이후의 염색과 봉제공정이 당사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제도로, 원사 생산단계부터 모든 공장을 지국에서 수행해야하는 원사기준과 다르다.

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구성요소에서 차지하는 모든 섬유나 방사의 총 무게의 비율이 중량기준으로 각각 8%, 10% 이하일 경우 원산지로 간주 하고 있다. 하지만 중·칠레 FTA에서 처음으로 미소기준 조항을 마련하였으나, 동 조항과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검토해 본 결과 세번변경기준은 농수산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섬유제품에 대한 동 기준의 적용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3) 섬유산업의 원산지규정 완화 및 강화 대상품목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만 하는 섬유산업은 140개이고 한국으로부터 수입만 하는 품목은 145개 품목이다.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만 하는 품목을 금액기준으로 살펴보면 10,000만 달러를 초과한 품목은 하나도 없고, 10,000만 달러 이하 1,000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14개 품목이며, 1,000만 달러 이하 100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42개 품목이고, 87개 품목은 100만 달러 이하에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완화품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중국이 한국으로 수입만 하는 품목을 금액기준으로 살펴보면 10,000만 달러를 초과한 품목은 2개 품목이고 10,000만 달러 이하 1,000만 달러 이상에 해당되는 품목은 13개 품목이며, 1,000만 달러 이하 100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46개 품목이고, 76개 품목은 100만 달러 이하 해당된다. 중국이 한국으로 수입만 하는 품목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강화품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또는 한·중 양국은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한 수출경쟁력 우위품목과 열위품목을 산출한 결과 38개 품목이 수출경쟁력 우위품목으로 나타났으며 이 품목들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완화품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수출경쟁력 열위품목으로 나타난 50개 품목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강화품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표 4-2> 섬유산업 원산지규정 완화 품목(HS 54, HS 55류)⁵⁷⁾

540120 540231 540233 540239 540261 540331 540339
540341 540730 540751 550200 550390 550410 550810
550911 550912 550921 550922 550931 550932 550941
550942 550951 550953 550959 550961 550962 550969
550999 551020 551311 551313 551319 551321 551411
551412 551422 551511 551611 551631 551632 551641
550992 551312 551449 551691

자료: 張萍, "中·韓 FTA 原產地 決定基準의 研究" 慶尙大學校, 碩士學位
論文. 2011. p.46.

<표 4-3> 섬유산업 원산지규정 강화품목 (HS 54, HS 55류)

540110 540232 540251 540252 540262 540269 540720
540781 540742 540743 540744 540752 540753 540754
540761 540769 540772 540773 540774 540782 540783
540792 540793 540821 540822 540823 550130 550320
550330 550490 550610 550630 550991 551011 551012
551219 551229 551339 551341 551421 551429 551512
551513 551519 551522 551529 551612 551622 551623
551642 551644 551692 550190 551441 551521 551643

자료: 張萍, 전개서, p.47.

위에 있는 표에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근거로 최종 분석한 결과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 원산지규정을 완화할 품목은 46개, 강화품목은 56개 품목으로 나
타났다.

57)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적용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
제55류: 인조 스테이플섬유.

2. 철강산업 (제72-73류) 원산지규정 비교

1) 철강산업의 평균관세율 차이

먼저 HS Code72류 철강산업의 경우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HS Code72류 철강 산업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4.9%인데 반해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HS Code72류 철강 산업에 대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6.19%를 차지하여 HS Code72류 철강 산업에 대한 양국의 평균관세율의 격차는 -1.29%로 나타났다.

다음에 HS Code73류 철강제품 산업의 경우에는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HS Code73류 철강 산업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9.02%인데 반해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철강 산업에 대한 한국의 평균관세율은 7.79%를 차지하여 HS Code73류 철강산업에 대한 양국의 평균관세율의 격차는 -1.23%로 나타났다.

2) 철강산업 수입시장 점유율

품목별로 살펴보면 17개의 중국 철강산업 제품이 한국의 철강산업 수입시장에서 0~1%를 차지하였고, 1~10%이하를 차지하는 품목은 36개 품목이고, 10%이상은 105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한국수입시장 점유율 0~1%, 1~10%이하, 10%이상에 속하는 품목들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완화품목으로 채택하는 것이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4개의 한국 철강산업 제품이 중국의 철강산업 수입시장에서 0~1%를 차지하였고, 1~10%이하를 차지하는 품목은 61개 품목이고, 10%이상의 88개 품목이다.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0~1%, 1~10%이하, 10%이상에 속하는 품목들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강화품목으로 채택하는 것이 중국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한국을 경유하는 우회수입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철강산업의 원산지규정 완화 및 강화 대상품목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만 하는 철강산업 품목은 168개이고 한국으로부터 수입

만 하는 품목은 179개다.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만 하는 품목을 금액기준으로 살펴보면 10,000만 달러를 초과한 품목은 5개 품목이고, 10,000만 달러 이하 1,000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32개 품목이며, 1,000만 달러 이하 100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65개 품목이고, 60개 품목은 100만 달러 이하에 해당되었다.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만하는 품목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완화품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중국이 한국으로 수입만 하는 품목을 금액기준으로 살펴보면 10,000만 달러를 초과한 품목은 9개 품목이고, 10,000만 달러 이하 1,000만 달러 이상에 해당되는 품목은 32개 품목이며, 1,000만 달러 이하 100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50개 품목이고, 69개 품목은 100만 달러 이하에 해당되었다. 중국이 한국으로 수입만 하는 품목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강화품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표 4-4> 철강산업 원산지규정 완화품목 (HS 72, HS 73류)⁵⁸⁾

720110	720211	720219	720221	720229	720230	720241
720249	720250	720280	720249	720292	720299	720310
720219	720836	720837	720838	720852	721114	721260
730300	730429	730431	730439	730441	730451	730459
730711	730719	730721	730810	730519	730890	731029
731210	731290	731300	731414	731439	731441	731449
731581	731582	731590	731600	731700	731812	731819
732111	732310	732391	732393	732399	732421	732490
732599	720291	720390	730240	731431	732591	

자료: 張萍, 전계서. p.49.

58) 제72류: 철강.
제73류: 철경의 제품.

<표 4-5> 철강산업 원산지규정 강화품목 (HS 72, HS 73류)

720421	720441	720510	720690	730712	720827	720926
720854	720890	720917	720918	720927	721012	721030
721049	721090	721123	721129	721190	721220	721240
721250	721391	721399	730110	730120	730290	730300
730449	730531	730590	730630	730640	730650	730690
730791	730792	730793	730799	730830	730890	730900
731010	731021	731512	731519	731589	731813	731814
731815	731816	731822	731823	731824	732010	732090
732219	732290					

자료: 張萍, 전계서, p49.

또는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한 수출경쟁력 상위품목과 열위품목을 산출한 결과 51개 품목이 수출경쟁력 상위품목으로 나타났으며, 이 품목들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완화품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수출경쟁력 열위품목으로 나타난 45개 품목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강화품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표 4-4>와 <표 4-5>에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근거로 최종 분석한 결과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 원산지규정을 완화할 품목은 62개, 강화품목은 58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3. 자동차산업(제 87 류) 원산지규정 비교

1) 한국의 중국에 자동차산업의 현황

(1)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자동차산업

중국은 예전부터 FTA에 미온적이었으나,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일본과 FTA협상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자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한·중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동아시아 영향력을 제한하고 한·중 FTA를 통해서 수출을 다변화 하자는 것이다. 또한 중국 내부의 여론도 우호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도 기업 차원에서는 추진할 만하다는 견해이다. 또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EU와의 FTA 체결시 정부가 추정하는 국내 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3.1%선인데 반해, 내년 2월 완결을 목표로 공동연구가 진행 중인 중국의 경우 FTA 체결시 GDP 증가율은 3.2%선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⁵⁹⁾ 다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농·수산물에 대한 국내 농·수산업의 피해, 한국국민의 보건, 안전 및 환경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의 저가 공산품이 다량 유입되면 관련 산업에 피해를 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외에도 우리의 중국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존도의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이를 낮추기 위해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중 FTA는 다각도로 논의되고 추진될 예정이다.

(2) 자동차산업의 평균관세율 차이

중국정부는 2006년 7월 1일부터 모든 차종의 관세율을 25%, 부품 평균관세율을 10%로 인하하였다. 또한 중국이 자동차 관세를 모두 철폐할 경우 자동차업종의 수출이 약 17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⁶⁰⁾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17.72%인데 반해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한국의 평균관세율은 6.83%를 차지하여 자동차산업에 대한 양국의 평균관세율의 격차는 -10.89%로 나타났다.

2) 자동차산업 수입시장 점유율

품목별로 살펴보면 8개의 중국 자동차산업 제품이 한국의 자동차산업 수입시

59) 국회 산업 자원 위원회, 「제조업 등의 무역 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토 보고서」, 2006.

60)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DRC), KIEP, 「공동 연구 보고서」, 2006.

장에서 0~1%를 차지하였고, 1~10%이하를 차지하는 품목은 10개 품목이고, 10%이상은 34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한국수입시장 점유 0~1%, 1~10% 이하, 10% 이상에 속하는 품목들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완화품목으로 채택하는 것이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3개의 한국 자동차산업 제품이 중국의 자동차산업 수입시장에서 0~1%를 차지하였고, 1~10%이하를 차지하는 품목은 16개 품목이고, 10%이상은 9개 품목으로 중국의 한국수입시장 점유율 품목보다 한국의 중국수입시장 점유율 품목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중국수입시장 점유율 0~1%, 1~10%이하, 10%이상에 속하는 품목들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강화품목으로 채택하는 것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한국을 경유한 우회수입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자동차산업의 원산지규정 완화 및 강화 대상품목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만 하는 자동차산업 품목은 50개이고 한국으로부터 수입만 하는 품목은 43개 있다.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만 하는 품목을 금액기준으로 살펴보면 10,000만 달러를 초과한 품목은 하나도 없고, 10,000만 달러 이하 1,000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13개 품목이며, 1,000만 달러 이하 100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17개 품목이고, 21개 품목은 100만 달러 이하에 해당되었다.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만하는 품목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완화품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중국이 한국으로 수입만 하는 품목을 금액기준으로 살펴보면 10,000만 달러를 초과한 품목은 4개 품목이고, 10,000만 달러 이하 1,000만 달러 이상에 해당되는 품목은 6개 품목이며, 1,000만 달러 이하 100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6개 품목이고, 15개 품목은 100만 달러 이하에 해당되었다. 중국이 한국으로 수입만하는 품목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강화품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한 수출경쟁력 상위품목과 열위품목을 산출한 결과 17개 품목이 수출경쟁력 상위품목으로 나타났으며 이 품목들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완화품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수출경쟁력 열위품목으로 나타난 7개 품목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강화품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표 4-6> 자동차산업 원산지규정 완화품목 (HS 87류)⁶¹⁾

870190 870210 870310 870590 870870 870880 870910
870990 871120 871190 871200 871310 871390 871419
871420 871491 871493 871499 871500 871680 871690
870919

자료: 張萍, "中韓FTA 原產地決定基準的 研究" 慶尙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1. p.57.

<표 4-7> 자동차 산업 원산지규정 강화품목 (HS 87류)

870110 870323 870322 870710 870790 870829 870840
870892 870893 870899 870911 870322

자료: 張萍, 전제서. p.57.

<표 4-6>과 <표 4-7>에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근거로 최종 분석한 결과 한 국와의 FTA 협상에서 원산지규정을 완화할 품목은 22개, 강화품목은 12개 품목 으로 나타났다.

4. 일반기계산업(제84류) 원산지규정 비교

1) 일반기계산업 수입시장 점유율

61) 제 87류: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품목별로 살펴보면 38개의 중국 기계 산업 제품이 한국의 기계 산업 수입시장에서 0~1%를 차지하였고, 1~10%이하를 차지하는 품목은 117개 품목이고, 10% 이상은 113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한국수입시장 점유율 0~1%, 1~10% 이하, 10%이상에 속하는 품목들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완화품목으로 채택하는 것이 중국의 대한국 수출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67개의 한국 기계 산업 제품이 중국의 기계 산업 수입시장에서 0~1%를 차지하였고, 1~10%이하를 차지하는 품목은 150개 품목이고, 10%이상은 56개 품목으로 중국의 한국수입시장 점유율 품목보다 한국의 중국수입시장 점유율 품목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중국수입시장 점유율 0~1%, 1~10% 이하, 10%이상에 속하는 품목들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강화품목으로 채택하는 것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한국을 경유한 우회수입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한국과 중국 기계결 FTA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일반기계산업에 대한 중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여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간단한 형태이며, 중·칠레 FTA에서는 냉장고(HS 8418),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에 따른 재료 처리하는 기계(HS 8419), 원심분리기(HS 8421), 분무용기기(HS 8424), 크레인(HS 8426), 불도저(HS 8429), 크레인, 불도저 등 기계부분품(HS 8431), 세탁기(HS 8450), 건조용 기계(HS 8451), 주물용 사형성형기(HS 8474), 탭(HS 8481)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범 50%이상일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4-8> 일반기계산업의 주요 품목별 FTA에서의 원산지규정

구분	한국		중국	
	한·칠레 FTA	한·ASEAN FTA	중·칠레 FTA	중·ASEAN FTA
기 체 압 축 기 (HS8414)	CTSH 및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5%)	CTH 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워드프로세싱 머신부분품 (HS 8473)	CTH	CTH 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이류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 (HS 8479)	8479.10-8479.89: CTH or 및 CTSH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8479.90: CTH	CTH 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8479.81-8479.89: CTSH 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냉장고 (HS 8418)	8418.10-8418.50: CTSH 8418.61-8418.50: CTSH 및 공제법 45% 이상 8418.91-8418.99는 CTH	CTH 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5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세탁기 (HS 8450)	CTH or CTSH 45% 이상 단, 8450.90에 한해 CTH	CTH 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자료: 조미진 외,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산업을 중심으로』, KIEP 대외정책연구원, 2008, p.63.

한편 한국은 한·칠레 FTA에서는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세번변경기준 만을 적용하거나, CTH 또는 CTSH와 부가가치기준을 함께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ASEAN FTA에서는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며, 창문형 공기 조절기(HS 841510), 금속 도금기(HS 8479.91), 기타기기(HS 8479.89),⁶²⁾ 볼베어링(HS 8482.10)에 한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3) 일반기계산업의 원산지규정 완화 및 강화 대상품목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만 하는 기계산업 품목은 272개이고 한국으로부터 수입만 하는 품목은 279개이다.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만 하는 품목을 금액기준으로 살펴보면 10,000만 달러를 초과한 품목은 5개 품목이고, 10,000만 달러 이하 1,000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46개 품목이며, 1,000만 달러 이하 100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89개 품목이고, 113개 품목은 100만 달러 이하 해당되었다.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만 하는 품목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완화품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중국이 한국으로 수입만 하는 품목을 금액기준으로 살펴보면 10,000만 달러를 초과한 품목은 7개 품목이고, 10,000만 달러 이하 1,000만 달러 이상에 해당되는 품목은 63개 품목이며, 1,000만 달러 이하 100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79개 품목이고, 105개 품목은 100만 달러 이하에 해당되었다. 중국이 한국으로 수입만 하는 품목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강화품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또는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한 수출경쟁력 상위품목과 열위품목을 산출한 결과 62개 품목이 수출경쟁력 상위품목으로 나타났으며 이 품목들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완화품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수출경쟁력 열위품목으로 나타난 100개 품목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강화품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62) 기타기기(HS 8479.89)에는 가발제조기, 가마니제조기, 공기청소기, 도포기, 마루 닦는 기계, 진공청소기, 반도체 제조용 조립기, 자동차세척기 등 다양한 품목이 있다.

<표 4-9> 일반기계산업 원산지규정 완화품목 (HS 84류)⁶³⁾

840211	840212	840219	840290	840410	840490	848790
840721	840731	840732	841191	841199	841231	841239
841420	841440	841451	841460	841490	841510	841520
841583	841590	841690	841790	841821	841829	841830
841840	841850	841861	841869	841891	841899	841911
841919	841960	842119	842191	842211	842310	842381
842382	842389	842390	842481	842490	842531	842542
842549	842649	842840	843141	843490	843610	843621
844010	844230	844331	844332	844339	844391	844400
844520	844630	845490	847010	847090	847141	847150
847160	847340	847420	847431	847480	847529	848180
848320	848330	848790				

<표 4-10> 일반기계산업 원산지규정 강화품목 (HS 84류)

840310	840390	840690	840734	840810	840820	840890
840991	841229	841280	841290	841319	841330	841350
841370	841381	841391	841392	841410	841430	841459
841480	841581	841582	841620	841710	841720	841810
841939	841940	841950	841989	841990	842010	842091
842099	842112	842121	842123	842129	842131	842139
842240	842330	842410	842430	842489	842511	842699
842710	842720	842820	842890	842952	843149	843230
843360	843390	843710	843810	843880	843920	844180
844319	844590	844711	844820	845140	845180	845190
845430	845630	845929	845961	846021	846040	846210
846241	846249	846420	846490	846592	846593	846596
846595	846599	846820	847290	847710	847720	847950
847981	847982	847990	848120	848310	848340	848390
848410	848620	848630	848640	848690		

자료: 張萍, “中·韓 FTA 原產地 決定基準의 研究” 慶尙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1. pp.51-52.

63) 제84류: 완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5. 전기전자산업(재85류) 원산지규정 비교

1) 한국과 중국의 전기전자산업의 현황

제조업 중에서는 전자산업이 각국에서 역내수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산업이고 기타 산업은 역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한·중 양국은 상호간의 경쟁우위제품을 중심으로 상호의존적 무역관계를 통해 발전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한국의 중국 전자 수·출입은 증가 추세이다.

전자산업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원동력의 하나로서 산업성장과 세계 일류제품, 첨단제품을 탄생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해외생산을 적극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 대한 생산이전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의 전자산업은 현재 가공 조립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경쟁제품의 구성으로 볼 때 한·중의 주력 경쟁우위제품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확실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양국 간 수출경쟁이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전자 산업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7.95%인데 반해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전자 산업에 대한 한국의 평균관세율은 4.87%를 차지하여 전기전자산업에 대한 양국의 평균관세율의 격차는 -3.08%로 나타났다.

전자산업 관련 품목에 있어 반도체 관련 품목, 디스크 등 기억장치(HS 8523), 인쇄회로(HS 8534), 축전기(HS 8532), 전화기기(HS 8517), 전기저항기(HS 8533) 등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나, 평균적으로 중국의 관세율이 한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전 관련품목인 헤드폰(HS 8518), 카세트플레이어(HS 8519), 기타 음성기록기(HS 8520), 재생용기기의 부분품(HS 8522), 텔레비전수신용기기(HS 8528)등에 중국은 20~3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이 중국에 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전동기의 부분품(HS 8503), 전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HS 8505), 무선기기 부분품(HS

8529), 전기회로 관련기기(HS 8536), 전기회로 관련기기 부분품(HS 8538) 및 기타 전기기기(HS 8543) 등이 그 예이다. 이런 경우 한국이 관세를 인하해야 할 입장이 된다.

한편 품목별로 살펴보면 11개의 중국 전기전자산업 제품이 한국의 전기전자산업 수입 시장에서 0~1%를 차지하였고, 1~10%이하를 차지하는 품목은 52개 품목이고, 10%이상은 95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한국수입시장 점유율 0~1%, 1~10%이하, 10%이상에 속하는 품목들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완화품목으로 채택하는 것이 중국의 대한국 수출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3개의 한국 전기전자산업 제품이 중국의 전기전자산업 수입시장에서 0~1%를 차지하였고, 1~10%이하를 차지하는 품목은 72개 품목이고, 10%이상은 31개 품목으로 중국의 한국수입시장 점유율 품목보다 한국의 중국수입시장 점유율 품목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중국수입시장 점유율 0~1%, 1~10%이하, 10%이상에 속하는 품목들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강화 품목으로 채택하는 것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한국을 경유한 우회수입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한국과 중국 전자산업의 주요 품목별 원산지규정 비교

자동차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자산업에서도 중국은 부가가치기준만을 적용하고 있으며, 다만 중·칠레 FTA에서 가정용 전기기기(HS 8509), 전기 가열식 이용기기(HS 8516), 광섬유케이블(HS 8544)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제법으로 50% 이상일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한·칠레 FTA에서는 주로 CTH 위주의 세번변경기준이 단일기준으로 적용되거나,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기준이 함께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ASEAN FTA에서는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며 예외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거나 HS 6단위 세번변경이 일어난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4-11> 전기전자산업의 주요 품목별 FTA에서의 원산지 규정

구분	한국		중국	
	한·칠레 FTA	한·ASEAN FTA	중·칠레 FTA	중·ASEAN FTA
변압기 (HS8504)	8504.10-8504.50: CTH or CTSH 및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5%) 8504.90: CTH	CTH 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8504.40: CTSH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 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 기준 (공제법 40%)
마그네틱 테이프 녹음기 (HS8520)	CTH 및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5%)	CTH 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 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 기준 (공제법 40%)
무선전화 관련품목 (HS8525)	CTH 및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5%)	CTH 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8525.30은 CTSH 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 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 기준 (공제법 40%)
무선기기 부분품 (HS8529)	CTH	CTH 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 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 기준 (공제법 40%)
전기식의 음양기기 (HS8531)	8531.10-8531.90: CTH or CTSH 및 부가가치기준 (공제법5%) 8531.90: CTH	CTH 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 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 기준 (공제법 40%)
열전자관 (HS8540)	8540.11-8540.89:C TH or CTSH및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5%) 8540.91-8540.99:C TH	CTH 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8540.20,8540.40, 8540.60,8540.72, 8540.89,8540.91: CTSH 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8540.71: CTSH 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5%)	부가가치 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 기준 (공제법 40%)

자료: 조미진 외,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산업을 중심으로』, KIEP
대의정책연구원, 2008, p.47.

일례로 한국의 대중 수출·수입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 중 하나인 무선기기 부분품(HS 8529)의 경우 한·칠레 FTA에서는 CTH만을 적용, 한·ASEAN FTA에서는 CTH를 적용하거나 공제법으로 40%이상일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반면, 중·칠레, 중·ASEAN FTA에서는 부가가치기준만을 적용하여 공제법으로 40%이상이면 원산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전기전자산업의 원산지규정 완화 및 강화 대상품목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만 하는 전기전자 산업 품목은 174개이고 수출만 하는 품목을 금액기준으로 살펴보면 10,000만 달러를 초과한 품목은 12개이다. 10,000만 달러이하 1,000만 달러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49개 품목이며, 1,000만 달러이하 100만 달러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51개 품목이고, 49개 품목은 100만 달러이하 해당되었다.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만하는 품목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완화품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중국이 한국으로 수입만 하는 품목을 금액기준으로 살펴보면 10,000만 달러를 초과한 품목은 17개 품목이고, 10,000만 달러이하 1,000만 달러 이상에 해당되는 품목은 34개 품목이며, 1,000만 달러 이하 100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44개 품목이고, 45개 품목은 100만 달러 이하에 해당되었다. 중국이 한국으로 수입만하는 품목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강화품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또는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한 수출경쟁력 상위품목과 열위품목을 산출한 결과 46개 품목이 수출경쟁력 상위품목으로 나타났으며 이 품목들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완화품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수출경쟁력 열위품목으로 나타난 33개 품목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강화품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표 4-12> 전기전자산업 원산지규정 완화품목 (HS 85류)⁶⁴⁾

850110	850120	850130	850140	850152	850161	850162
850220	850410	850423	850431	850440	850450	850490
850511	850610	850720	850730	850940	850980	850990
851010	851030	851180	851210	851230	851610	851629
851631	851640	851650	851660	851671	851672	851679
851690	851821	851822	851829	851830	851840	852190
852520	852713	852721	852791	852851	852872	852910
853012	853521	853922	853932	854089	854590	854690
851621	852871					

자료: 張萍, “中·韓 FTA 原產地 決定基準的 研究” 慶尙大學校, 碩士學位
論文, 2011. p.57.

<표 4-13> 전기전자산업 원산지규정 강화품목 (HS 85류)

850153	850163	850164	850212	850213	850413	850432
850433	850434	850590	850710	850780	850790	851110
851130	851190	851240	851531	851539	851580	851890
852691	853110	853229	853230	853290	853390	853529
853590	853610	853690	853710	853890	853990	854110
854129	854190	854290	854411	854460	854890	

자료: 張萍, 전계서. p.57.

<표 4-12>와 <표 4-13>에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근거로 최종 분석한 결과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 원산지규정을 완화할 품목은 58개, 강화품목은 41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64) 제85류: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V. 中國의 原產地規定 問題點 과 改善方案

1. 중국 원산지규정의 현황

2005년 전, 중국의 수·출입무역의 원산지업무는 1986년의 『중화인민공화국세관에서 제정한 수입상품 원산지의 임시규정』과 1992년의 『중화인민공화국수출 물품 원산지제도』 두개의 법규로 진행하였다. 이 두 법규는 중국 대외무역의 발전 및 원산지업무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무역형세의 끊임없는 발전으로 인해 그들은 입법과 WTO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였으며 선진국처럼 원산지제도를 무역정책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중국은 2004년 9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원산지조례』 (“조례”라고 약칭)를 제정하고 2005년부터 시행하였다. “조례”는 27조와 한 개 부속규정 “원산지규정 중 실질적변형기준의 실시에 관한”, 입법취지, 적용범위, 원산지확정원칙, 원산지판정기준, 원산지증명서발급 및 검사, 위반조례의 법률적 책임 등의 문제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전의 법규와 비교하면 “조례”는 아래와 같은 여섯 가지가 개선이 되었다.⁶⁵⁾

첫째, “조례”는 수·출입상품 원산지의 확정 원칙을 통일하였다.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을 수출입제품원산지를 판정하는 공통기준으로 하였다. 동시에, 새로운 “조례”는 실질변형은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하고 특정가공기준과 부가가치변경을 부가기준으로 하여 실질변형의 적용순서를 확정하였다.

둘째, “조례”적용의 목적과 범위가 더욱 광범위하다. 수입상품의 세율적용, 무역통계 등을 제외하고도 새로운 “조례”는 최혜국대우, 반덤핑과 보호 조치, 세이프가드, 원산지표시관리, 수입지역 제한, 관세할당액 등 조치의 실시 및 정부 조달 시 수입상품물 원산지의 확정에도 적용된다.

셋째, “조례”는 반 규제조항을 도입하였다. 즉 상품에 대하여 진행한 어떠한

65) 人民日報海外版, 2004年11月9日 第七版.

가공 혹은 처리가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등 연관 규정을 규제하기 위해서라면 세관은 상품의 원산지를 확정할 때 이러한 상품의 가공과 처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원산지조례 중반 규제 조항을 도입 한 것은 중국이 국외수출상이 중국의 반덤핑, 반 보호와 보장조치 등을 회피하기 위한 연관 규정에 법률 보장을 제공한다.

넷째, 새로운 “조례”는 명확한 원산지관리를 수행하는 행정기관과 관리인의 권리와 의무 및 준수하여야 할 규정을 확정 하였다. 예를 들면 수입상품의 수령인은 상품의 원산지를 세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수입한 물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세관에서 그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세관이 수입제품 원산지를 심사할 때 수입제품수령인에게 수입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그 제품의 수출국의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제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하며 수입과 같은 행정규제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처음으로 원산지제도하의 원산지 표시의 관리를 명확하게 제시 하였다. 새로운“조례”는 제16조에서 “국가는 원산지에 대하여 관리한다. 제품 혹은 그 포장의 원산지표시는 본 조례에서 확정된 원산지와 일치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불법상인이 거짓원산지표시로 상품의 원산지를 위조하여 사기 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여섯째, 새로운“조례”는 비밀원칙을 설립하였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거나 혹은 자료와 정보의 확정의 관련 기관, 개인의 허가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 세관 및 발급기관은 그 자료와 정보에 대하여 비밀로 하여야 한다.⁶⁶⁾

위의 변화에서 새로운“조례”가 이전의 법규에 대한 개선으로 법률 면에서 주요하게 실현 되었다. 이것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원산지제도관련 법규 및 기타 조치에 부합되는 WTO원산지규정 협정을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서술한 “조례”의 여섯 개의 개선은 중국 이전의 원산지제도와 WTO 원산지규정 협정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원산지제도의 핵심내용으로 즉, 원산지의 판정기준, 특히 부가가치기준은 새로운“조례”의 부속규정으로 과다한 수정을 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새로운“조례”는 이전의 규정과 같이 하였으며 중국의 원

66) 孟國碧. 原產地規則與我國反規避立法模式的選擇. 廣東商學院學報, 2004.

산지제도를 일종의 무역정책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법률에서도 새로운“조례” 개선은 원칙상에서의 개선이며 실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2. 원산지표시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은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해 정의하고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특정 수입물품, 수입세트물품은 수 백개 품목을 지정하여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품목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원산지 관리제도는 정부의 무역정책의 수행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며 품목 지정이 없는 등 품목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또는 한국은 대외무역법 시행령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원산지표시기준, 원산지표시 일반원칙, 구체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중국 원산지조례에서 원산지 표시 일반원칙, 구체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소비자가 원산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중국은 원산지 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원산지 관리 대상물품을 지정하고 품목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중국에서도 한국처럼 원산지표시의 원칙, 내용, 글자, 활자체, 크기, 위치 등 원산지 규정을 구체적으로 해야 하며, 원산지 오인 우려 물품의 표시, 세트물품의 포장이나 용기의 표시, 표시면제 등 원산지표시의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3. 원산지판정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국 FTA 원산지규정상 원산지 판정기준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원산지 판정기준은 최종생산 또는 가공공정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았다. 수입 원재료나 부품의 일부를 가지고 중국 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제품도 중국을 원산지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⁶⁷⁾

특히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 따라 작성하고, 구성비율에 관한 원칙은 중국 대외경제무역 관장하는 국가기관이 중국의 국무원과 합의하여 제정하고 정한다고 합의하여 사인별로 매우 자의적인 판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입과 관련한 잠정규정에서는 적어도 원산지는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사용에 의하여 판정됨을 명시하여 실질적 가공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수출의 경우보다는 낮다. 그러나 부가가치기준의 30%증식에 대한 계산에 관하여는 세부상황이 부족하여 여전히 규정의 실례 적용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 서로 다른 적용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다시 새롭게 개정된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에서도 여전히 각 부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결여되어 있으며 당해 규정이 적절히 적용될 수 있을까 우려가 있다.

둘째,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경제선진화와 개방을 목표로 많은 법령을 개정해 왔으며 특히 원산지규정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운용에 있어서 지나치게 자의적이었다는 문제점을 보였던 선례에 비추어 이후에도 계속 중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셋째, 원산지규정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전통적인 수출법 또는 수입법의 원산지관련 규정이 크게 원산지규정의 적용에 이견이 적다고 할 완전생산기준의 규정에 대하여 주로 언급하고 있지만, 적용에 따라 통상 마찰로 이어지기 쉬운 실질적 변형기준과 관련한 규정들이 새로운 수출입물품원산지조례에서도 향후 제정될 것이라고 명시 할 뿐이다. 그리고 규정회피를 위한 임시의 가공, 처리에 대한 판단 역시 구체성이 없다는 사실은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 교역물품의 원산지문제를 놓고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한 분쟁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⁶⁸⁾

이처럼 중국 원산지규정, 특히 실질적 변형기준에서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다. 중국의 경우, 완전생산기준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중국의 산업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출입물품원산지조례에서도 실질적 변형기준에 관한 구체적 표준기준 그리고

67) I. Gebhardt and K. Olbrich "Foreign Trade Law in China" Journal of World Trade 36(1)February 2002.

68) 박명섭, 박우진, 『중국의 원산지규정 개정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Vol.27. 한국해법학회, 2005.

부가가치 계산법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으로 제정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현행 구성의 주요한 문제는 특수 물품에 원산지기준을 제정하지 못하며, 중국의 이익을 수호하지 못하고 있다. 특정제품 혹은 영역에서 특수한 원산지제도를 제정하여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미국이 섬유 원산지제도를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원산지제도를 개정하지 않아 중국에 투자하여 한국에서 원단을 수입하여 사용하는 한국의 섬유류 제조업체들이나 중국 등에 봉제, 조립(임가공 형태)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업체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직조한 후 한국에서 염색, 프린팅을 하여 미국에서 수출하는 직물이나, 한국에서 재단하여 중국에 수출, 봉제, 조립한 후 미국에 수출하는 의류는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하여야 미국에서 통관이 가능하나, 중국의 원산지제도에는 “한국”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⁶⁹⁾

정부조달영역에서 “국산”의 원산지제도를 제정하여야 한다.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확정된 “정부조달협정” 및 미국, 유럽 등 서방선진국가의 규정에 따라 “중국산”의 원산지제도를 제정할 수 있다.

4. 원산지확인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국은 원산지확인에 대한 이의제기와 이의 처리에 관한규정이 없으며, 그 이외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 분석에 대한 규정도 없다. 중국 원산지증명서는 한국의 증명서에 비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존재 한다. 중국 원산지제도를 통한 결실은 원산지 제도가 가공무역 관리에 대한 단속을 약화시킨다.

기업이 주문자생산방식(OEM)을 통하여 생산한 만달무선마우스가 그 대표적 사례가 된다. “중국 제조”의 이름을 걸었지만 인건비가 몇 십 달러가 드는 마우스는 수출시 소매상과 판매상의 이윤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부속품 가치의 수출비용을 털어내면 기업에 남은 이윤은 1/10의 가공비밖에 없다. 이러면 실제 생산품 하나로 중국에 남는 무역액은 미미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만일 이 생산품을

69) 외국이 통상환경 분야별 통상환경 외교통상부. 2009.

원산지 판정기준의 백분율로 계산한다면 이는 중국원산지생산품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러므로 “중국제조”라는 이름을 가질 수도 없다. 이러한 생산품의 무역을 통해 중국에서 얻는 이윤은 가공기업에서 얻는 가공비이다. 이는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이외에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이 생산품은 수출시 반드시 사증발급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야한다. 많은 경우에 이러한 과정들이 무시되고 관련부문에서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또 원산지제도의 허점에 대한 수정을 진행하지 않는다. 요해한 바의 의하면 많은 기업들에서는 한 번도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일들을 발휘하지 못하고 가공무역 생산에 대한 그 어떠한 단속도 진행할 수 없다. 이는 수출과 수입 물품의 원산지 통계측면에서 존재하는 허점의 요소이다.

원산지제도규정은 중국 원산지제도 판정기준의 핵심내용이며 법률이며, 법규이며, 또한 나라의 행정실천규칙이다. 그러므로 이는 한 개 나라의 투자, 무역, 다국적 기업 간의 경영활동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갖추어야하며,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 중국은 대외무역법 성장방식을 변화시키고 외국 투자 기업들의 호평과 관심을 끌고 있다. 이때 안정되고 효율성이 있는 원산지제도 판정기준을 세우는 것은 원산지제도의 중요한 핵심이다.

낙후한 원산지제도가 실제사업에서 가져오는 의미를 잃게 한다. 원산지제도가 오래전부터 실행되어 주관부문을 막론하고 구체적인 사증관리부문에 이르기까지 원산지 사업 관리 시스템 정립을 위하여 대량의 자금을 투자하였지만 이는 아직도 개혁발전의 요구에 부합되지 못하다.⁷⁰⁾ 그리고 원산지제도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또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원산지확인 절차의 개선방법은 다음과 같다.

세관은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대해 심사확정시 수입물품의 수하인으로 하여금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 수출국의 관련기구에 대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수출물품과 관련하여서는 수출물품의 발송인은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산하의

70) 金曉晨, 修訂原產地規則中實質性改變標準之我見, 法學雜誌. 2005年, 第二期.

각 지역 출입국검사검역기구,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및 기타 지역분회에 수출물품원산지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발급 기구는 수출물품 발송인의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규정에 따라 수출물품의 원산지의 대해 심사 및 확인하고 수출물품원산지증명을 발급해야 하며 중국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출물품에 대해 반드시 수출물품원산지증명의 발급을 거절해야 한다.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의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하여 상무부가 국가품질검험검역국과 중국무역 촉진회에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과 발급기준을 통일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원산지증명서 관리 시스템을 형성하여야 한다.

각 나라의 원산지서류 양식의 다양성 문제에 대해서는 세관 현장의 수집, 증명서발급 기관연계 혹은 원산지서류양식의 관리 등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확인된 각국 및 지역의 원산지증명서양식을 정리하여 전국 세관이 공유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양식 자료실을 만들고 관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된 외교 사무규율의 기초 하에 각 주요 나라와 지역은 증명서 발급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 국제인증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인증 방법을 늘리고 인증을 보장하여야 한다.

중국은 원산지확인에 대한 이의제기와 이의 처리에 관한규정에 없으며 그 이외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 분석에 대한 규정 없다. 원산지확인의 착오 및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원산지확인에 대한 이의제기와 이의의 처리 절차 그리고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 분석에 관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⁷¹⁾

71) 홍진혜, “중국 원산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2. p.58.

VI. 結 論

21세기에 들어가면서 무역 협정과 동시에 지역무역 협정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정부도 FTA에 많은 관심을 갖고, 특히 2003년 이래 중국정부는 이미 4개국과 FTA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결과 중국의 무역규모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아시아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아직 유럽처럼 경제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한국과 중국의 정부·학계 등 여러 방면에서는 한국과 중국 FTA 가능성에 대해 다방면으로 연구·토론 중이다.

원산지규정은 그 내용에 따라 FTA의 이익이 달라 질 수 있을 정도로 FTA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FTA체결이 확대됨에 따라 관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역내산 물품을 어떠한 판정기준에 따라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현 시점에 있어서 중국 국내 연구의 대부분은 세계 원산지 규정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중국과 한국의 FTA 체결에 대한 연구는 중·한 양국의 경제 구조 및 체결 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본 논문처럼 원산지 규정이 입각한 한국과 중국 기 체결 원산지 규정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는 전무하다.

아직 양국 간 FTA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원산지 규정의 형태에 대해서는 확정하여 언급하기 어렵지만 완전생산기준, 실질적인변형기준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협상을 통해 양국이 모두 수용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실질적 변형의 기준으로 세번변경의 원칙 아래, 주요공정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을 품목의 특성, 양국의 산업구조 특성,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완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산지규정이 통관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회원국 간의 관세인하 혜택을 침해하게 된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에 있어서 산업 무역구조를 보면 한국과 중국 경제는 경쟁성과 보완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은 핵심적인 주제인 한국과 중국 FTA의 원산지규정 협상에서 필

요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중·한 양국 간의 10대 수출입 품목을 기준으로 선정한 주요 산업으로 섬유, 철강, 전자, 기계, 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이외에 중국과 한국의 원산지표시, 원산지판정, 원산지확인, 위반의 처벌 등을 비교해서 중국원산지규정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2005년부터 새로운 원산지 규정, 즉,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원산지조례』를 실시하였다. 중국원산지제도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긴장시키고 분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견해 차이와 통계수치상의 차이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일차적인 문제가 있겠으나 중국 정부당국이 적용하는 원산지제도의 구체적인 정책에 문제가 있다. 아울러 중국 현재 원산지 표시방법, 원산지 판정기준, 원산지 확인절차 등에서의 문제점을 제기 하였고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위한 개선방안을 설명 하였다.

본 논문에서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 표시방법,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만 그 내용을 미비하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비교를 통해 중국 현행 원산지제도의 문제점을 제시 하였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과 중국 원산지규정 비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1. 한국문헌

- 김량희, “한·중·일 FTA의 추진현황과 정략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무한,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김순옥, “한국FTA 부가가치 원산지 결정기준의 효율적 적용에 대한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연숙, “한·중 FTA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3권, 한국무역학회, 2008.
- 김재원, 『관세사 대외무역법』, 박문각, 2008.
- 김한성·조미진·정재완·김민성,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
- 동복영, “FTA 협정상의 원산지판정기준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류영현, “韓·中 FTA 推進을 위한 原產地制度의 比較研究”,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박명섭·박우진, 『중국의 원산지규정 개정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 2005.
- 박주원, “한국 원산지증명제도의 개선장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송조율,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 규정에 관한 비교연구”,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양효정, “한·중 주요 산업별 원산지규정 비교분석”,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여신문, “한·중 원산지 관리제도 비교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여지나, “중·홍콩 CEPA 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KIEP 지역경제포커스』, 09-28호,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09.

- 우동욱, “한·중 철강산업의 교역추이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성임, “FTA 원산지규정을 활용한 수출전략”,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이춘삼, “WTO 통일원산지규정의 체제화 과정”, 중재학회지 제 6권, 2009.
- 임재원, “다원화된 원산지기준 및 적용절차에 따른 원산지심사 대응전략 연구”, 2008.
- 장평, “중·한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전순환, 『대외무역법』, 한울출판사, 2009.
- 정지영,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원산지 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조미진·여지나·김민성,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 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 조염아, “FTA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비교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조정란, “한국과 일본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분석 및 한·일FTA 원산지규정시사점 연구”, 한국무역학회, 학술논문, 2010.
- 초서량, “한국 FTA와 중국 FTA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강릉원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최난군·정형곤·김한성, 『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향』, 연구보고서,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 최문, “한·중FTA협상에 대비한 섬유산업의 품목별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현대중국학회, 학술논문, 2011.
- 최홍석, “FTA상 특혜원산지규정의 무역장벽효과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홍진혜, “중국 원산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2. 중국문헌

- 王超, CEPA 原產地規則中的問題及其改善 政法論議第六期, 2007.
- 王超,涂遠瀾, 區域貿易安排下的原產地規則問題初探[A] 中國法學會世界貿易組織法研究會, 二零零七年年會論文集[C], 2007.
- 王洁, 美國原產地規則對我國紡織品服裝出口的影響 公文易文祕資源网, 2009.
- 金曉晨, 修訂原產地規則中實質性改變標準之我見 法學雜誌, 第二期, 2005.
- 栗琪翔, “論原產地規則的應用與我國原產地規則的完善”, 2005.
- 許海峰, “國際貿易中原產地規則比較研究”, 2005.
- 傅凌云, 陳劍利, “原產地效應對消費者的影響及國際化戰略研究”, 2009.
- 何金輝, “論我們原產地規則的不足與完善”, 2008.
- 李婧, 中國FTA實踐的原產地規則評析 [D], 中國优秀碩士學位論文全文數據庫.
- 王學平, “我國 FTA 原產地規則淺析”, 安陽師範學院, 2010.
- 邢磊磊, “自由貿易區的不同原產地規則的比較及其作用研究” [D], 中國优秀碩士學位論文全文數據庫, 2009.
- 蘇提, “論中國-東盟自由貿易區合作框架下的老鐘經濟關係” [D], 中國博士學位論文全文數據庫, 2009.
-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令, 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貨物原產地條例, 2005.

3. 기타자료

-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 현황” 네이버 지식.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산업경제 엿보기, <http://blog.naver.com/soonha1967>.
- “2010年中國纖維產業市場運行態勢分析”, 中國行業研究報告网整理,2010.
- “自由貿易區原產地規則及其作用研究”, <http://591-lw.com> ,2010.
- “原產地規則現狀與趨勢” 國際商貿人才門戶-世貿人才網,
- “中國內地貨物貿易中的原產地規則研究”, 慧博論文网. <http://www.hblww.com.cn>.
- “韓中FTA與其對韓國電子產業的影響” 2010.

中國海關,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

中國知网, <http://www.cnki.net/index.htm>

FTA中文網, <http://www.ftchinese.com>

WTO原產地規則,缺陷,影響對 http://www.dss.gov.cn/Article_Print.asp?ArticleID=91366.

中國自由貿易區服務網, <http://fta.mofcom.gov.cn/index.shtml>.

中國農業主要產品產量居世界的位次,

http://www.stats.gov.cn/tjsj/qtsj/gjsj/2007/t20080626_402488282.htm.

4. 영문문헌

I. Gebhardt and K. Olbrich "Foreign Trade Law in China" *Journal of World Trade*36(1)February 2002.

Krishna, k," Understanding Rules of Origin", NBER working papers, 2005.

Augier, Patricia, Michael Gasiorok, and Charles Lai Tong. "The Impact of Rules of Origin on Trade Flows." *Economic Policy*. 2005.

Report of the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to the Council for Trade in Goods, WTO G/L831, 29 October 2007.

Stefano Inama, *Rules of origin in international Tra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ABSTRACT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Rules of Origin in Korea and China

Ying-Chao Xu(胥穎超/서영초)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Jeong-Bong Hwang

Since the 21st century, the trade agreements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are spread widely and actively. Chinese government is beginning to pay close attention to FTA, especially in 2003, Chinese government formed FTA entente with other four countries, which leads to the rapid growth in trade scale of China.

China and Korea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Asia, but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are not as compact as the European community. Now the government and academia of China and Korea are putting up various studies and discussions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FTA between China and Korea.

Rules of Origin are an important part of FTA, which can affect the interests of FTA. And with the extension of FTA system, for the products which have tariff preferences, the problem about 'how to judge with a certain criteria'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At present, most of the studies in domestic of China are focused on the global origin, and the studies about FTA between China and Korea are mainly about the economic structures and the effects on the development of

economic after forming FTA. This thesis is a disquisition which analyzes and studies the rules of origin about FTA forming between China and Korea based on the technical comparison regarding the rules of origin.

Specifically, this thesis was composed of six chapters.

The first chapter was the introduction part, which was mainly about the background, motivation and method of research and the structure of this thesis.

The rules of origin's summarization, the necessity and significance for unifying the rules of origin of WTO, and the primary benchmark for the determination of origin was introduced in Chapter 2.

In the third chapter, at first the legal system regarding rules of origin of China and Korea was analyzed, the characters of the two countries' rules of origin were introduced. Then the rules of origin in Korea were analyzed based on the denotation method, determination benchmark, procedure of confirming and other aspects.

In Chapter 4, the rules of origin of China and Korea were analyzed and compared centered around five industries namely fiber industry, steel industry, automobile industry, machinery industry and electronic industry.

China's rules of origin were analyzed in Chapter 5, some of the problems regarding denotation method, benchmark of determination and confirmation procedure of origin were pointed out and scenarios to improve the pointed out problems were proposed.

Chapter 6 summarizes the main contents of this thesis, and the conclusion were briefly described.